

2026.9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 외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지원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기간 및 내용이 적용되며, 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각 부처 소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사업목적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을 인정·격려하고,
좋은 일자리 확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선정규모

연 100개사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선정개요

신청대상

고용보험 성립 2년 이상,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 기업

평가항목

고용증가량(증가율), 규모업종별 평균 이직률,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 종합적 고려

결격사유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명단공표, 신용평가 8등급 이하,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경우 등

선정혜택

- 대통령 인증패 수여
- 금융, 세무조사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

선정절차

① 신청·접수(기업신청·국민추천·고용보험DB 발굴) → ② 후보기업 선정(고용증가량·이직률 등 우수기업) → ③ 현장실사·검증(후보기업 동의·결격사유·일자리질 개선 노력) → ④ 최종 선정 및 시상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명단

1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 (주)금희에스아★ 	3 (주)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4 (주)루트제이드★ 	5 (주)메이머스트 	6 (주)비에치 이브이에스★ 	7 (주)삼안★★ 	8 (주)세강 
9 (주)세스코★ 	10 (주)어센드미디어 	11 (주)에스앤아이 코퍼레이션★★ 	12 (주)에이테크놀로지★ 	13 (주)오투기★★★ 	14 (주)우전산전 	15 (주)유에스티 	16 (주)진양오일빌 
17 (주)창성 	18 (주)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9 (주)코스알엑스 	20 (주)크라프트 	21 (주)텐퍼센트커피 	22 (주)펄트론 	23 (주)풀무원푸드엔컬처 	24 (주)피엔피시큐어 
25 (주)하나에어로 다이내믹스 	26 (주)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 	27 (주)화이어캡스 	28 (주)홍찬엔지니어링 	29 PKC(주) 	30 SK바이오텍 주식회사 	31 노무법인 이산 	32 (주)단암시스템즈 
33 (주)도쿄일렉트론 코리아 주식회사★ 	34 (주)동부엔지니어링★ 	35 (주)두산퓨얼셀(주) 	36 롯데렌탈(주)★ 	37 롯데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38 멜콘 주식회사 	39 부광약품(주) 	40 (주)브라이트에너지 파트너스 주식회사 
41 (주)비에치아이 주식회사 	42 (주)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 	43 송월(주) 	44 (주)수자원기술 주식회사 	45 (주)쏘테크★ 	46 에스디바이오센서 주식회사 	47 (주)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48 (주)에이엠셀코리아 유한회사★★★★ 
49 (주)에이치엔지케미칼 주식회사 	50 (주)에이파워성주주식회사 	51 (주)이앤에스(주) 	52 (주)제로투엔건축사 사무소종합건설★ 	53 (주)YH테이타베이스 	54 (주)주식회사 광고인 	55 (주)주식회사 그레이게임즈 	56 (주)주식회사 동우유니온 
57 (주)주식회사 드림솔 	58 (주)주식회사 디엠에이 엔씨건축사사무소 	59 (주)주식회사 매드엔진★ 	60 (주)주식회사 메가젠플랜트 	61 (주)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62 (주)주식회사 바임 	63 (주)주식회사 블루워드 	64 (주)주식회사 서한★ 
65 (주)주식회사 세스코라이프케어 	66 (주)주식회사 아이언오토 	67 (주)주식회사에케트 테크놀로지서비스 	68 (주)주식회사 엔도로보틱스 	69 (주)주식회사 엠엑스로보틱스 	70 (주)주식회사 오토핸즈 	71 (주)주식회사 원익큐엔씨 	72 (주)주식회사 유신 
73 (주)주식회사 일신비츠온★★ 	74 (주)주식회사 진인프라★ 	75 (주)주식회사 케이티 스튜디오지니 	76 (주)주식회사 클라비 	77 (주)주식회사 티에이치엔★★ 	78 (주)주식회사 하루리 	79 (주)주식회사 하이브랩 	80 (주)주식회사 경신 
81 (주)주식회사 네오플 	82 (주)주식회사더스킨팩토리 	83 (주)주식회사디오비로지스 	84 (주)주식회사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85 (주)주식회사아시아벤치 	86 (주)주식회사 이노스페이스★ 	87 (주)주식회사크레이버 코퍼레이션 	88 (주)주식회사 토리든 
89 (주)주식회사파라다이스 세가사미★ 	90 (주)이가에이씨엠 건축사사무소 	91 (주)하림★ 	92 (주)지니언스(주) 	93 (주)칼자이스(주)★★ 	94 (주)컴즈 주식회사 	95 (주)클래스병원 	96 (주)포근한 재활병원 
97 (주)포스코리튬솔루션 주식회사 	98 (주)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99 (주)한미약품 (주) 	100 (주)한화이센셀 주식회사★ 	★ 2년 연속 으뜸기업('25~'26): 20개(중소5, 중견9, 대6) ★★ 3년 연속 으뜸기업('24~'26): 5개(중견3, 대2) ★★★ 4년 연속 으뜸기업('23~'26): 1개(대1) ★★★★ 5년 연속 으뜸기업('22~'26): 1개(대1)			



CONTENTS

I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기관명	연번	소관과(기관)	지 원 내 용	페이지
고용노동부	1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24 및 민간채용플랫폼을 통한 기업 홍보 및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5
	2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고용차별개선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7
	3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역 우수기업 ONE-STOP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9
	4	기업일자리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선정 시 가점 부여	10
	5	직업능력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시 가점 부여	11
	6	청년채용기반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12
	7	노사협력정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우대	13
	8	노사협력정책과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사업장 선정 우대	14
	9	산업안전정책과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선정 우대	15
	10	산업안전기준과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1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1	정보통신방송 기술정책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우대	21
법무부	12	출입국심사과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25
	13	체류관리과	사증·체류 우대	26
국방부	14	재정회계담당관실	공사·용역 및 물품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29
산업통상부	15	한국무역보험공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무역보험 특별 지원	37
	16	중견기업지원과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38
	17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선정평가 정책우대 가점 부여	39
중소벤처 기업부	18	인력정책과	일자리 으뜸기업 등 참 관찰은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 및 홍보 지원	43
	19	기술보증기금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감면	44

기관명	연번	소관과(기관)	지 원 내 용	페이지
국세청	20	소득세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47
	21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모범납세자 추천우대	48
관세청	22	기업심사과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51
	23	세원심사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52
조달청	24	전략비축물자과	비축이용업체 강소기업 선정 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	55
	25	구매총괄과	MAS 2단계 경쟁 평가 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확대	56
방위사업청	26	방산 중소기업지원과	방위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부여	61
금융위원회	27	산업금융과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시 우대	65
	28	산업금융과	(중소기업은행)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66
	29	은행과	(농협은행)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여신금리 우대	67
	30	은행과	(수협은행) 여신지원 시 0.2% 이내 금리우대	68
	31	산업금융과	(산업은행) 여신지원 시 최대 0.7% 이내 금리우대	60
	32	은행과	(iM뱅크) 여신지원 시 0.2% 이내 금리우대	70
	33	은행과	(신한은행) 여신지원 시 0.5% 금리우대(신한 일하기 좋은 기업대출)	71
	34	은행과	(SC제일은행) 여신지원 시 0.3% 금리우대	73
	35	은행과	(하나은행) 여신지원 시 0.3% 금리우대	74
	36	산업금융과	(신용보증기금)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75
	37	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고용창출우대기업 여신금리 우대 등	76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38	공정시장과	(한국예탁결제원)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7개 서비스 수수료 면제	77
	39	방송광고정책과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81
	40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82

CONTENTS

기관명	연번	소관과(기관)	지 원 내 용	페이지
기후에너지 환경부	41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85
	42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해외환경 프로젝트 티당성 조사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86
	43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환경기술 해외 현지 실증 지원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87
	44	한국환경공단	혁신형 물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88
	45	한국전력기술(주)	용역, 물품 및 공사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90
인천광역시	46	산업창업정책과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93
	47	산업창업정책과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 시 우대	94
	48	산업창업정책과	중소기업 품질경영개선 지원 시 우대	95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49	창업진흥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할인	99
대전광역시	50	기업투자유치과	해외 온라인 마케팅 가점 부여	103
	51	기업투자유치과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가점 부여	104
	52	기업투자유치과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가점 부여	105
	53	기업투자유치과	국내 제품인증 획득 지원 가점 부여	106
	54	국제통상담당관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가점 부여	107
울산광역시	55	세정담당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111
세종특별 자치시	56	기업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	115
	57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 가점 부여	116
	58	기업지원과	고용환경개선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가점 부여	117
경기도	59	지역금융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 부여	121
	60	지역금융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	122
	61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및 보증요율 우대	123

기관명	연번	소관과(기관)	지 원 내 용	페이지
강원특별 자치도	62	일자리청년과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127
	63	일자리청년과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128
	64	기업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129
충청북도	65	국제통상과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신청기업 가점 부여	133
경상북도	66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137
	67	외교통상과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업체 우선 선정	138
	68	세정담당관	모범 납세기업 세무조사 유예	139
경상남도	69	세정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143
	70	경제기업과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144
	71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이용 단체할인 혜택 제공	145

☞ 업종·지역·규모 등 개별 지원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대지원제도가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II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제도

기관명	연번	소관과(기관)	지 원 내 용	페이지
재정경제부	72	조세특례제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51
	73	조세특례제도과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3
	74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154
	75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ESG 경영실천기업 지원 프로그램	155
국방부	76	재정회계담당관실	공사 입찰 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159
문화체육관광부	77	문화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콘텐츠 지원사업 가점 부여	163
산업통상부	78	한국광해광업공단	폐광지역 중소기업 대상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혜택지원	167
	79	지역경제진흥과	지역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신규고용 추가인센티브) 추가지원	168
	80	한국가스공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169
	81	한국가스공사	중소협력사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	170
기후에너지 환경부	8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일자리 창출 환경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개선 지원	173
	8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규 고용창출기업에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에 대한 가점 부여	174
	8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일자리창출 으뜸기업에 대한 환경정책자금 우선지원 가점 부여	175
	8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수환경산업체 발표평가 시 일자리창출 유망기업 우대	176
	8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 친화형 환경 R&D 신진연구자 지원	177
	87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공사 입찰 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178
	88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공사·용역 및 물품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180
	89	한국환경공단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정규직 채용 기업에 환경시설 시공평가 가점 부여	185
	9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87

기관명	연번	소관과(기관)	지 원 내 용	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91	판로정책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가점 부여	191
	92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192
국세청	93	조사기획과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195
	94	징세과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196
조달청	95	구매총괄과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199
	96	구매총괄과	사회적 일자리 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	203
	97	구매총괄과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	204
방위사업청	98	방위산업금융지원TF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적용	209
	99	방산중소기업지원과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가점 부여	210
금융위원회	100	산업금융과	(신용보증기금) 고용촉진(안정) 창업보증	213
	101	산업금융과	(신용보증기금) 가젤형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214
	102	산업금융과	(신용보증기금) 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215
	103	산업금융과	(신용보증기금) 고용창출기업 특례보증	216
	104	산업금융과	(신용보증기금)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217
	105	은행과	(경남은행) 여신지원 시 금리 최대 0.5% 및 외화 수수료 우대	218
	106	은행과	(경남은행) 여신지원 시 금리 최대 1.0% 우대	219
	107	은행과	(부산은행) 여신지원 시 금리우대	220
	108	은행과	(우리은행) 4대 사회보험 도입 사업장 및 고용 우수기업 여신금리 최대 0.2% 우대	221
	109	은행과	(전북은행) 기술형창업기업대출	222
	110	산업금융과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취약·배려층 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224
	111	부산은행	(부산은행)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특례보증부 대출 지원	225
	112	은행과	(국민은행) 일자리창출 기업 대상 여신지원 시 1.3%p 이내 금리우대	226

CONTENTS

기관명	연번	소관과(기관)	지 원 내 용	페이지
서울특별시	113	일자리정책과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229
	114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별보증	230
부산광역시	115	일자리노동과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233
	116	세정운영담당관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234
	117	세정운영담당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35
	118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임대료 감면	236
인천광역시	119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239
	12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240
	121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기업 특별보증 지원	241
	122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 특별보증 지원	242
	123	산업창업정책과	우수기업(유망중소·비전·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 시 우대	243
	124	산업창업정책과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우대	244
	125	세정담당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45
	126	세정담당관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지원	246
	127	일자리경제과	제물포구 구민 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47
	128	강화군청	강화군 이전 또는 신설기업 보조금 지원	249
대구광역시	129	국제통상과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57
	130	고용노동정책과	고용친화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254
	131	세정담당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55

기관명	연번	소관과(기관)	지 원 내 용	페이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32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사업 우대지원	259
	133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260
	134	세정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61
	135	세정과	부동산 취득세 면제	262
	136	창업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264
	137	창업진흥과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지원 확대	265
	138	교육지원정책관	일자리 우수기업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266
	139	중소벤처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267
	140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268
	141	국제협력관	통상진흥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269
	142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270
대전광역시	143	기업지원정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273
울산광역시	144	경제정책관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선정	277
세종특별자치시	145	기업지원과	국내·해외 판로 지원사업 가점 부여	281
	146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282
	147	기업지원과	청년친화환경조성	283
경기도	148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287
	149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88
	150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기업 홍보물에 사용권 부여	289
	151	국제통상과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290
	152	기업육성과	기업환경 개선사업(노동, 작업, 소방) 신청 시 가점 부여	291

CONTENTS

기관명	연번	소관과(기관)	지 원 내 용	페이지
경기도	153	법인조사1팀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92
	154	세정과	경기도 유공납세자 우선 선정	293
	155	경기도주식회사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294
	15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개발생산물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295
	15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신청기업 가점 부여	296
	15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297
	15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신청기업 가점 부여	298
	16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299
	16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해외 통상촉진단 지원사업 신청기업 가점 부여	300
	16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해외 G-FAIR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301
	16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R&D센터, 광고비즈니스센터 입주 시 가점 부여	302
	164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기업부담금 감면	303
	165	경기테크노파크	경기TP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신청 시 무심사 합격	304
	166	한국은행 경기본부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도	305
충청북도	167	일자리정책과	고용창출 실적 우수기업 인증·지원	309
	168	경제기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310
	169	세정담당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12
충청남도	170	일자리기업지원과	고용우수기업 노동환경개선금 지원	315
	171	일자리기업지원과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노동환경개선금 지원	316
	172	세정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17
	173	일자리기업지원과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318
	174	일자리기업지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 및 성장지원 특화 보증	319

기관명	연번	소관과(기관)	지 원 내 용	페이지
전북특별 자치도	175	기업애로해소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323
	176	기업애로해소과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시 우대	324
	177	기업애로해소과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시 가점 부여	325
	178	기업애로해소과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326
	179	세정과	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 유예	327
경상북도	180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우대	331
경상남도	181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우대지원	335
	182	국제통상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336
	183	산업인력과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신청기업 자격요건 우대	337
	184	산업인력과	경상남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기업 심사 우대	338
제주특별 자치도	185	노동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지원	341
	186	노동일자리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342
	187	노동일자리과	청년 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343
	188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344

☞ 고용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제도로써, 업종·지역·규모 등 개별 지원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대지원제도가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고용노동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1

고용24 및 민간채용플랫폼을 통한
기업 홍보 및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기업일자리지원과
- 연락처_ 044-202-7235



관련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24', 민간채용플랫폼 '사람인' 온라인 채용관 서비스 등을 통한 으뜸기업 선정기업 일괄 홍보 및 채용지원
- '사람인' 채용관과 '고용24' 내 기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기업에 정보제공

'고용24' 홍보 지원내용

- 일자리 으뜸기업이 고용24에 등록한 구인공고는 구직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테마별 채용관(정부인증기업)일자리 으뜸기업관)에서도 별도 제공
 - * 테마별 채용관: 구직자의 선호와 필요를 고려하여 채용정보를 주제별(공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 우량기업, 직종·직군별 등)로 제공하는 서비스
- 고용24의 통합기업정보 및 채용 상세정보의 기업정보 조회 시 "일자리 으뜸기업" 표기를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민간채용플랫폼 '사람인' 온라인 채용관 지원내용

- 타겟메일(E-DM), 모바일 푸시, 제휴 커뮤니티 및 SNS 등으로 채용정보 홍보
- 구인에 적극적인 수요가 있는 참여기업에 브랜딩 서비스 제공
 - 기업의 특징점을 구직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입사지원 향상에 기여
 - 브랜딩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진 홍보콘텐츠는 향후 기한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150만 개 이상의 인재풀 서비스 제공
 - 1:1 메시지 기능을 통해 개별 면접 제안 가능
- 면접 등 구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성 검사 서비스 제공
 -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도구
 -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채용 및 입사 후 조직적응력을 예측하여 리스크 감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
- * '사람인'의 경우 2026년도만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절차

-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후 명단 통보 시 자동 적용



향후 추진계획

- 고용24를 통한 기업홍보 강화 방안 지속 발굴 및 서비스 개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 고용노동부
- 부서명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연락처 044-202-7530
-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 연락처 044-202-7573
-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연락처 044-202-7502



관련규정

-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4호)



지원대상 및 요건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 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포함)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5점) 부여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사업명		지원 내용
고 용 안 정 장 려 금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위라벨+4.5 프로젝트)	• 노사합의로 임금감소없이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 (장려금) ①20~50인 미만 기업: 1인당 30~50만원, ②5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1인당 20~40만원 * (우대지원) 생명·안전 업종, 비수도권 기업 등은 월 10만원 가산
	정규직 전환 장려금	•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에게 장려금, 임금증가액 일부를 지원 ▶ (장려금) ①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월 60만원, ②그렇지 않은 경우 월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을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 장려금, 인프라 투자비 등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 (장려금) 월 최대 20~30만원,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은 월 최대 20만원, 육아기 근로자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지원금에서 2배 지원 ▶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정보·보안, 출퇴근 관리 시스템 투자 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80%) 한도 내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사업주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연 18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사업주〉 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고용센터(심사위원회)〉 참여 신청서 심사 및 선정 통보 → 〈사업주〉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실시 → 〈사업주〉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등〉 지원금 등 지급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간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사업주〉 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고용센터(심사위원회)〉 참여 신청서 심사 및 선정 통보 → 〈사업주〉 지원 제도 도입 및 사업실시 → 〈사업주〉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등〉 지원금 등 지급



향후 추진계획

- 고시에 반영하여 시행 중

3

지역 우수기업 ONE-STOP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기업일자리지원과
- 연락처_ 044-202-7215



관련규정

- 「직업안정법」 제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지원대상

- 일자리 으뜸기업 등 지역 우수기업 중 채용, 장려금 등 서비스 수요가 있는 기업
- 일·육아 지원제도 설계, 인사노무관리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필요 기업
-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용지원 등 통합 지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내용 및 절차

- 고용센터에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①진단 → ②종합컨설팅 → ③채용지원 → ④기초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① 진단	② 종합 컨설팅	③ 채용 지원	④ 기초서비스
• 행정정보 분석 등 기업 특성 진단 •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 관련 부서·기관 협업을 통한 종합 컨설팅 실시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솔루션 제시, 지원사업 연계	• 채용대행, 채용행사, 동행면접 등 • 채용지원서비스 집중 제공	• 월 1회 이상 상담 실시 • 애로사항 청취 및 주요 변동사항 등 확인 • 서비스 수요 발생 시 연계

〈기업진단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유형분류〉

▪ 임금·평가체계 점검·개선이 필요한 경우 ▪ 정부지원금에 대한 정보 및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	인사노무 관리 등 경영지원
▪ 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산재예방을 위한 컨설팅·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인프라·환경 개선
▪ 체계적인 신입사원 직무교육 필요한 경우 ▪ 지속적인 직원들의 역량 개발이 필요한 경우	→	맞춤형 인재양성
▪ 임금·복지 등 근무조건에 비해 채용이 어려운 경우 ▪ 효과적인 기업 홍보 방법을 모르는 경우 등	→	인지도 제고



서비스 기간

- 지원기업 설정일부터 해당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1년간 지원
- * 채용 등 서비스 수요가 있는 경우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 가능

4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기업일자리지원과
- 연락처_ 044-202-7235



관련규정

- 정부포상 업무지침(2026.1.1. 시행)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中 '일자리창출' 부문 - '민간기업 종사자' 분야 심사 시
일자리 질 개선 실적항목에서 가점 3점 부여
- * (목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일자리창출 분위기 조성
(규모) 총 120점 (훈장 5점, 포장 7점, 대통령표창 34점, 국무총리표창 36점, 장관표창 38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후 ~ 인증 유효기간



지원절차

-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신청(또는 추천) 이후 심사 시 일괄 확인



향후 추진계획

- 매년 2~3월 경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정부포상 추진계획 공고·게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직업능력정책과
- 연락처_ 044-202-7285



관련규정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인증실시업무의 위탁), 제19조(인증대상기관), 제20조(인증의 기준 및 절차)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1호)
-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 및 지침(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 대기업/중소기업 분야는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선취업후학습분야는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지원수준 및 한도

- 대기업/중소기업 분야는 인적자원관리부문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하여 총점에서 가점(2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계획수립 → 공고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결정 → 인증서 수여 → 사후관리

6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청년채용기반과
- 연락처_ 044-202-7456



관련규정

-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하반기 예정)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前 고용창출 우수기업)
- * 단,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결정사유 등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혁신역량(5점) - 1. 고용부, 중기부 인증 보유(신청 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건 또는 선정 건): 2개 이상(1점), 1개(0.5점), 없음(0점)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시 각종 인증보유현황 포함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접수
- 지원기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접수 기간



지원절차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접수 시 인증보유현황 제출



향후 추진계획

- '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접수('26.7~8월 잠정)

-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노사협력정책과
- 연락처_ 044-202-7598



관련규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



지원대상 및 요건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을 신청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심사기준 중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 정도' 항목(배점 50점)에 '고용창출 노력'을 포함하여 심사 시 가점부여
- * 우수기업 및 대상 지원내용: (행정상 우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정부 물품 조달 적격 심사 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하여 우수기업 1년, 총리상 이상 2년, 장관상 1년 유예), (금융상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 시 보증한도 우대 등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심사시 반영(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간 지원)



지원절차

- 신청공고 → 신청서 접수(우수기업: 지방고용노동관서, 대상: 사업수행기관) → 1차 서면심사 → 2차 사례발표 → 선정공고(공고일로부터 3년간 지원)



향후 추진계획

-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심사 시 선정기준에 고용창출 실적을 반영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사업장 선정 우대

-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노사협력정책과
- 연락처_ 044-202-7593



관련규정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 (우대요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 시 선정 우대(가점 3점)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도와 기업의 자율적 혁신활동을 촉진·지원
- *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 10개*의 컨설팅 분야로 구분
- * ① 근로시간 ② 임금체계 ③ 근로자 참여 및 협력 ④ 직장문화 ⑤ 직무역량 ⑥ 직무체계 ⑦ 평가체계 ⑧ 차별개선·원하청상생 ⑨ 공정채용 ⑩장년친화
- 기업 내 컨설팅 추진체계 구축·운영, 전체 근로자 참여 촉진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1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 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당해연도부터 그 다음연도까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시 선정 우대



지원절차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기업 심사·선정
- * 심사기준: 사업장 여건, 컨설팅 수행 역량, 수행 효과성 등



향후 추진계획

-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및 추가 지원방안 등 검토

-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산업안전정책과
- 연락처_ 044-202-8816



관련규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5호)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칙 제1063호)



지원대상 및 요건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 융자금 지급 대상자(우선순위) 결정 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가점 부여)

◇ 융자 제외 대상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③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융자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연리 1.5%(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6년(1년)
- 지원기간: 2025.12.31.(화) ~ 융자 재원 소진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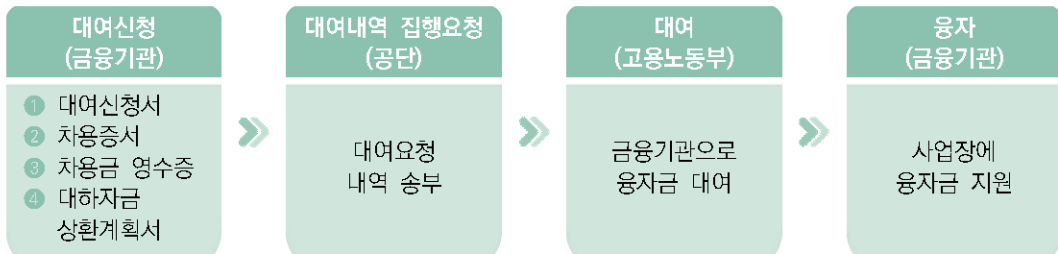


지원 절차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 계획의 타당성 확인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자 결정
- 시설투자 후 공단이 투자계획서 준수 여부 등 투자 완료 확인, 투자 확인서 발급
- 융자금 지급대상자는 주거은행과 대출 약정체결, 은행을 통해 융자금 대여
- 융자금 지원 후 융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 (대여업무)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 발급, 융자는 금융기관(15개)에서 추진



10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산업안전기준과
- 연락처_ 044-202-8851



관련규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5호)



지원대상 및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건설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가점 부여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고위험개선)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시 소요비용의 70%(3천만원 한도)
-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소요비용의 80%(3천만원 한도)
- (소규모 특화) 끼임·부딪힘 예방설비 도입 시 소요비용의 90%(3천만원 한도)
 - *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의 경우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를 상위업종 등) 각각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6년(1년)
- 지원기간: 연중(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발생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산재예방 시설·장비 투자를 지원
- 산재예방시설·장비 지원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액 결정
-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여부를 확인한 후 자금지원
- 지원설비의 활용상태 및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향후 추진계획

- 연중 신청접수(재원 소진 시까지)
- 일부 관리품목 및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의 경우 별도 공모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1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우대

- 기관명_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부서명_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연락처_ 044-202-6237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지원대상 및 요건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신청기업 중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前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부여
- *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신청기업 중 고용창출에 노력한 우수기업이 신규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일(으뜸기업 유효기간 이내) 기준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인정



지원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 제출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신규과제 협약



향후 추진계획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선정평가 시 고용우수기업의 가점 지속 부여
- * 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사업별 공고시 반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법 무 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12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기관명_ 법무부
- 부서명_ 출입국심사과
- 연락처_ 02-2110-4043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종사자



지원수준 및 한도

- 카드소지자(본인)는 최대 3인까지 동반하여 출입국 우대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가능(가족 동반인 경우 3인 초과이용 가능)
 -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6번 전용 출국장, 2~5번 일반출국장 측문
 -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전용 출구
- ※ 국제공항별 전용출입국 및 운영시간은 체크인 카운터 또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발급 인원
 - ▶ 임직원 수가 100인 미만인 기업: 으뜸기업 당 1명
 - ▶ 임직원 수가 1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 으뜸기업 당 최대 10명
 - ▶ 임직원 수가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기업: 으뜸기업 당 최대 20명
 - ▶ 임직원 수가 5,000인 이상 10,000인 미만인 기업: 으뜸기업 당 최대 30명
 - ▶ 임직원 수가 10,000인 이상 50,000인 미만인 기업: 으뜸기업 당 최대 50명
 - ▶ 임직원 수가 50,000인 이상인 기업: 으뜸기업 당 최대 100명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카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발급심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글로벌인재비자센터(032-740-7604) 문의
- 발급 신청 및 교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35) 문의

- 기관명_ 법무부
- 부서명_ 체류관리과
- 연락처_ 02-2110-4068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일로부터 2년



지원수준 및 한도

- 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간소화 및 업체방문 실태조사 면제
-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신청 시) 우대적용기업 입증자료*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하고, 업체 설립(법인등기부등본) 및 운영실태 입증서류(납세실적증명서 등) 제출 면제
- * 표창장 또는 인증패 사본, 주무부처 보도자료 등
-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 고용계약서, 개인별 납세실적 서류제출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지원기간: 매년 초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산정



지원절차

- 외국인 직원 신규채용 및 채용기간 연장 시, 초청업체의 소재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국 방 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14

공사·용역 및 물품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기관명_ 국방부
- 부서명_ 재정회계담당관실
- 연락처_ 02-748-5367



관련규정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지원대상 및 요건

- 아래 내용은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관련규정 참조

〈물품 적격심사〉

평가요소	등급	평점	비고
고용창출 우수 * 점한도 1점	A. 신규고용 우수기업(설립 18개월 이상)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1.0	
		0.8	
		0.6	
	- 신설기업(설립 18개월 미만)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0.5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0.4	
	B. 청년고용 우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0.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0.4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2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 이상인 기업	0.4	

〈일반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① 고용창출	고용 창출 우수	A. 신규고용 우수기업(설립 18개월 이상)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1.0
		6% 이상	7% 이상	9% 이상	0.8
		5% 이상	5% 이상	5% 이상	0.6
	B. 신설기업(설립 18개월 미만)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0.5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0.4			
	C.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0.4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인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 청년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0		
- 청년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0.8			
-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6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 이상		0.8			
②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0.6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2		
	공동수급체 구성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6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3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6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 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3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6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3		
	③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0.5	
			B.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0.4	
C.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0.3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④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0.40
		- 5년 이상 ~ 10년 미만	0.35
		- 3년 이상 ~ 5년 미만	0.30
		- 3년 미만	0.25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0.4
		C.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0.4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0.3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 이상인 기업	0.3

〈군시설공사 적격심사〉

심사항목	등 급	평점
일자리 창출기업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3.0
	② 2등급인 자	2.0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5

〈기술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⑤ 정책지원	정책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건설인력 고용	고용 탄력성	A. 고용탄력성 1등급	1.5
		B. 고용탄력성 2등급	1.42
		C. 고용탄력성 3등급	1.34
		D. 고용탄력성 4등급	1.26
		E. 고용탄력성 5등급	1.18
		F. 고용탄력성 6등급	1.1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A. 0건	0.00
		B. 1 ~ 2건	-0.04
		C. 3 ~ 4건	-0.08
		D. 5 ~ 6건	-0.12
		E. 7 ~ 8건	-0.16
		F. 9건 이상	-0.20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	등 급	평점
인력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에 따른 가점	
	- 1%이상 2%미만	1.0
	- 2%이상 3%미만	1.5
	- 3%이상	2.0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훈령 참조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훈령 시행일
- 지원기간: 규정 개정 시까지



지원절차

- 적격심사 또는 이행능력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점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법률 개정 등 정부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제도 개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산업통상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15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무역보험 특별 지원

- 부처명_ 산업통상부
- 기관명_ 한국무역보험공사
- 기관명_ 영업기획팀
- 연락처_ 02-399-7091



관련규정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지침



지원대상 및 요건

- 많은, 좋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중견기업
 - ① 상시 근로자 수 증가기업(중소 10%, 중견 5%)
 - ② 조세특례제한법 상 일자리 관련 조세 특례를 받은 기업
 - ③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일자리 관련 지원금을 받은 기업
 - ④ 정부, 지자체 등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인증한 기업
 - ⑤ 근속연수 우수기업(7년 이상)
 - ⑥ 대표자가 청년인 창업·벤처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한도 추가(최대 10억원) 제공 및 보증료 할인(최대 50%)
- 수출신용보증(선적후·매입) 보증한도 우대(최대 1.5배) 제공 및 보증료 할인(최대 50%)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수입자 한도 우대(최대 2배) 제공 및 보험료 할인(최대 50%)
- 국외기업 신용조사 5회 무료 제공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6.9.30.까지 무역보험 특별 지원 예정



지원절차

일자리 특별 지원
신청(기업 → 무보)



서류 및 고용 정부 확인
(무보, 고용정보원)



한도 책정 및 증권
발급(무보 → 은행)



대출 실행
(은행 → 기업)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산업통상부
- 부서명_ 중견기업지원과
- 연락처_ 044-203-4373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운영 매뉴얼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단,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 * 신규 지원인력 평가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중견기업에 한함)에 대해 가점부여(+2점)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 및 기술전문 경력인 연구인력의 초기 중견기업 채용 지원

구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석사	박사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4년 신규 지원인력부터 적용
- 지원기간: 최대 3년 지원



지원절차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제출



서면평가



선정 통보



협약 체결



향후 추진계획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신규인력 평가시 인센티브 지속 반영

17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선정평가 정책우대 가점 부여

- 기관명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부서명_ 지사화팀
- 연락처_ 02-3460-7437



관련규정

- 「해외지사화사업 통합관리지침」



지원대상 및 요건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일자리 으뜸기업 정책우대가점(5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으뜸기업 선정 당해연도부터 그 다음연도까지 해외지사화사업 신청 시 선정 우대



지원절차

- 해외지사화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기업 심사·선정 및 사업 진행



향후 추진계획

-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평가시 인센티브 반영 지속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18

일자리 으뜸기업 등 참 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 및 홍보 지원

- 기관명_ 중소기업부
- 부서명_ 인력정책과
- 연락처_ 044-204-7443



관련규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



지원대상 및 요건

- '참 관장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기술력·성장성, 일자리 환경 등이 우수하여 인증 또는 확인받은 기업 중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요건: ① 신용등급(BB- 이상), ② 영업이익 창출(최근 2년간 > 0), ③ 낮은 퇴사율(최근 3개월 15% 미만), ④ 임금체불·채납·재해·성범죄 미해당(최근 3년), 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⑥ 중소기업인력법상 지원 제외업종에 미해당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기업 정보제공) 「참 관장은 중소기업 플랫폼(www.smes.go.kr/gsmb)」을 통해 청년 등 구직자에게 해당 기업의 위치, 연봉수준, 조직문화 등 근로환경 및 재무정보 등 제공
- (채용기업 지원) 참 관장은 중소기업 중 우수 일자리 채용(정규직 + 연봉 3천만원 이상) 기업에 대해 워크넷, 잡코리아 내 전용 채용관 운영 및 채용박람회 개최
- (우수기업 홍보) 참 관장은 중소기업 중 대기업에 못지않은 임금·복지 수준을 갖춘 기업에 대해 회사 제품 및 근무환경, CEO 경영철학 등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매년 7월중 참 관장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 지원기간: 정부·지자체로부터 받은 인증이 유효하고 상기 6가지 요건 충족 시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감면

- 기관명_ 기술보증기금
- 부서명_ 기술보증부
- 연락처_ 051-606-7459



관련규정

- 보증료등의 운용요령(기술보증기금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보증료율 0.2%p 감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보증심사 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패”로 선정 여부 확인하여 우대 혜택 제공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대 지원할 예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국 세 청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 기관명_ 국세청
- 부서명_ 소득세과
- 연락처_ 044-200-3259



관련규정

- 정기 조사대상 선정 지침(비공개)



지원대상 및 요건

-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 자산 2,000억 원 이상 법인이거나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법인세 정기 조사 대상 선정 제외



적용시점

-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지원절차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안내 공고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에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상을 제공받아 조사 대상자 선정 시점에 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

- 기관명_ 국세청
- 부서명_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연락처_ 044-204-2718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前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자(일자리 으뜸기업)는 모범납세자 선정 시 추천 우대



지원기간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고용노동부로부터 으뜸기업 명단을 받아 모범납세자 후보자 선정 시 반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관 세 청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22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 기관명_ 관세청
- 부서명_ 기업심사과
- 연락처_ 042-481-7973



관련규정

- 내부규정(비공개)



지원대상 및 요건

- 전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이며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1~3%(최소 1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수출입기업 또는 유지할 계획이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서 미화 1억불 이하 중소 수출입기업
-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관세청 유예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배제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수출입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관세조사 유예
-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대대상으로 선정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관세조사 유예기업 선정일부터
- 지원기간: 1년



지원절차

- 신청방법: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과장 > 관세조사 유예 > 신청



향후 추진계획

- 대상, 우대요건, 접수시기 등을 확정하여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 예정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 기관명_ 관세청
- 부서명_ 세원심사과
- 연락처_ 042-481-7644



관련규정

- 관세법 제10조 및 제107조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前 고용창출 우수기업) 종사자
- * 관세청장이 정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배제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과 고액(5천만원 이상)의 세액정정·과태료(과징금) 납부액에 대해 납기 연장(최대 1년) 및 분할납부(최대 6회) 허용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납부기한 도래 전에 세관장에 신청 후 승인일
- 지원기간: 1년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



향후 추진계획

- 대상, 우대요건, 접수시기 등 매년 2월말에서 3월초 확정하여 보도자료 배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조 달 청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비축이용업체 강소기업 선정 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

- 기관명_ 조달청
- 부서명_ 전략비축물자과
- 연락처_ 042-724-7199



관련규정

-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19조(우수기업 지원) 및 그에 따른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모집 공고서(연 1회 실시)
- *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조달청 비축원자재 이용기업 중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방출량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요건

- (신설) 최근 1년간 전체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인 경우 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비축이용업체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신청자격부여) 강소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전체고용인원 증가율이 3% 이상인 경우 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으로 선정된 기업은,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신청 자격요건(기본요건충족, 선택요건 3개 중 1개 이상 충족) 중 선택요건 3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선정시 지원내용)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 혜택

지원 분야	지원 세부 내용
공급량 확대	- 주간 업체별 방출한도량을 현행보다 3배 확대
유동성 지원	-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0.5%p 할인 - 외상 및 대여 기본 이자율 적용기간 연장(외상: 6개월→1년, 대여: 6개월)
행정적 지원	-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유효기간을 비축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기한까지 자동 연장

MAS 2단계 경쟁 평가 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확대

- 기관명_ 조달청
- 부서명_ 구매총괄과
- 연락처_ 042-724-7293



관련규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 방식



지원대상 및 요건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우대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4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20점 이상 60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0점 이상 20점 이하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채불사업주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저출생 대응	+1.0점
		부품 국산화	+1.0점
선택 평가항목 (60점 이하)	기술 및 품질	고도기술	+1.5점
		일반기술	+1.0점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7.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7.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7.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지원수준 및 한도

- 저출생 대응 정책지원 신설: 1.0점
 -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우수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성평등가족부)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중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지표 추가: 1.0점
 - * 전체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수출기업 지원 평가기준 세분화
 - *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 하여 수출기업 가점 차등 적용
수출실적별(500만 USD, 10만 USD), G-PASS기업은 등급별(A등급, B등급)
-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26.1.1. 이후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하되, '25.12.31.까지 인증 취득자에 한해 인증 유효기간까지 가점에 반영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6.1.1. 이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납품대상업체 선정 시 적용(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중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는 '26.7.1.부터 적용)
- 지원기간: 규정 개정 시까지



지원절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납품대상업체 선정 시 적용



향후 추진계획

-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후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방위사업청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부여

- 기관명_ 방위사업청
- 부서명_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연락처_ 02-2079-6479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
-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구 분	세부 사업명	가점 비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1.0%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1.0%
방위산업진입 지원사업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0%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1.0%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1.5%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사업별 지정된 가점 부여
- 단, 다른 가·감점 항목과의 합이 전체 평가 점수의 5%(국방벤처(혁신기술) 지원사업,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최대 3%)를 넘을 수 없음



지원절차

- 연구개발기관 또는 지원 대상기업(주관기관)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금융위원회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27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시 우대

- 기관명_ 중소기업은행
- 부서명_ 리스크분석부
- 연락처_ 02-729-7066



관련규정

- 여신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기준(중소기업은행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 또는 고용창출 관련 정량지표가 양호한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신용평가시 비재무모형 평가항목 중 “ESG” 평가에 고용창출 관련 내용을 약 8.4% 비중으로 반영

〈정성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A급	■ 환경 및 사회를 위한 기업 활동이 매우 많거나, 경영자의 신뢰성 및 경영방식의 합리성이 매우 높음
B급	■ 환경 및 사회를 위한 기업 활동이 많거나, 경영자의 신뢰성 및 경영방식의 합리성이 높음
C급	■ 환경 및 사회를 위한 기업 활동이 보통이거나, 경영자의 신뢰성 및 경영방식의 합리성이 보통
D급	■ 환경 및 사회를 위한 기업 활동이 다소 적거나, 경영자의 신뢰성 및 경영방식의 합리성이 다소 낮음
E급	■ 환경 및 사회를 위한 기업 활동이 없거나, 경영자의 신뢰성 및 경영방식의 합리성이 매우낮음



지원절차

- 신용평가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간퇴직률” 및 “자산대비 국민연금고지금액” 산출하여 정량지표로 활용, 사회적 기업활동 여부를 정성적 평가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는 '24.1.2.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우대할 예정

(중소기업은행)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 기관명_ 중소기업은행
- 부서명_ 사회공헌부
- 연락처_ 02-6322-5014



관련규정

- 일자리채움펀드 취급기준(중소기업은행 내부기준)



지원대상 및 요건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당행 채용플랫폼 i-ONE JOB(www.ibkonejob.co.kr)을 통해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된 중소·중견기업
 - * i-ONE JOB에 채용공고 및 합격자 등록 필수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채용직원 1인당 50만원의 금융비용 지원(동일기업당 최대 2억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지원기간: 2026.12.31.(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ibkonejob.co.kr)를 통한 신청



향후 추진계획

- 동 제도 한도 소진시까지 지속 지원 예정

(농협은행)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여신금리 우대

- 기관명_ 농협은행
- 부서명_ 여신기획부
- 연락처_ 02-2080-2568



관련규정

-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농협은행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창출 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농협은행 내규상 여신 취급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요건 충족 시 0.10% 여신금리 우대
- 지원한도: 별도 제한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해당 우대금리 약정 체결 시점
- 지원기간: 여신 약정기간



지원절차

- 통상의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 지속 운용 예정

(수협은행) 여신지원 시 0.2% 이내 금리우대

- 기관명_ 수협은행
- 부서명_ 기업금융부
- 연락처_ 02-2240-0258



관련규정

- 여신업무방법취급기준(수협은행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창출 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수협은행 내규상 여신취급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지원시 0.2% 이내 금리우대
- 지원한도: 별도 제한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해당여신 만기 시까지



지원절차

- 통상의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 지속 운용

31

(산업은행) 여신지원 시 최대 0.7% 이내 금리우대

- 기관명_ 한국산업은행
- 부서명_ 영업·투자기획부
- 연락처_ 02-787-6910

**관련규정**

- 산업은행 '여신상품 운용지침'

**지원대상 및 요건**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포함)
- 세제상 고용확대기업
- 국내 복귀 해외진출기업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여신 지원 시 최대 0.7%p 이내 금리우대
- 운용규모: 4.0조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해당 여신 취급일로부터
- 지원기간: 해당 여신 만기일까지

**지원절차**

- 통상의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 지속 운용

(iM뱅크) 여신지원 시 0.2% 이내 금리우대

- 기관명_ iM뱅크
- 부서명_ 여신정책부
- 연락처_ 053-740-2322



관련규정

- 여신상품취급기준(iM뱅크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iM뱅크 내규 상 여신 취급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지원 시 0.2% 이내 금리우대
- 지원한도: 별도 제한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일로부터 해당 여신 만기 시까지



지원절차

- 신용평가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iM뱅크의 자체 심사를 거쳐 우대조치 지원여부 결정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 지속 운용

(신한은행) 여신지원 시 0.5% 금리우대(신한 일하기 좋은 기업대출)

- 기관명_ 신한은행
- 부서명_ 고객솔루션부
- 연락처_ 02-2151-2447



관련규정

- 여신 업무기준 > 기업여신 과목별 취급방법(신한은행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창출 또는 일, 생활 균형에 기여한 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 중 신한은행 내규상 해당 상품 취급이 제한되지 않은 기업

대상기업	선정기관	확인방법
▶ 일자리 창출기업(사업자등록일 기준 만3년 이상 사업영위 & 과거 1년 또는 작년년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3명 이상)		고용 실적 및 근로자 증가 확인은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간이세액 신고대상자(코드:A01) 등 객관적으로 고용창출을 확인하여 서류 증빙
▶ 서울형 강소기업 ▶ 일·생활 균형기업	서울특별시	https://job.seoul.go.kr 확인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최근 3년 이내 선정기업 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확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 확인
▶ 강소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확인 고용노동부 명의를 포함한 인증서 확인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고용우수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명의를 포함한 인증서 확인 (최근 3년 이내 선정기업 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확인
▶ U턴기업	산업통상자원부	U턴기업 선정확인서 확인 (직전 또는 당해연도 고용실적 있는 기업 限)
▶ 고용의 질 우수기업(좋은 일자리 기업(GWP) 또는 최고 일자리 기업(BWP))	신용보증기금	신보에서 은행으로 대상 기업공유 통해 ‘고용의 질 우수기업’ 리스트 공지
▶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수료생 1명 이상 고용 기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발행한 ‘고용확인서’ 사본 확인
▶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발급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인서’ 확인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서’ 확인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법무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확인
▶ 행복한 중기 일자리 수상 기업 (최근 3년 이내 선정기업 限)	중소기업중앙회	https://www.kbiz.or.kr 확인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지원 시 연 0.5%p 금리우대
- 지원한도: 동일인 당 최고 30억 이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해당 여신(신한 일하기 좋은 기업대출) 취급일부터 적용
- 지원기간: 해당 여신 만기 시까지



지원절차

- 통상의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 지속 운용

(SC제일은행) 여신지원 시 0.3% 금리우대

- 기관명_ SC제일은행
- 부서명_ SME상품전략부
- 연락처_ 02-3702-4061



관련규정

- 여신업무방법 취급 기준



지원대상 및 요건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녹색성장산업기업, 사회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중 SC제일은행 내규상 여신 취급이 제한되지 않은 중소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지원 시 0.3% 금리우대
- 지원수준: 별도 제한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여신 승인일
- 지원기간: 여신 만기일



지원절차

- 일반적인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여신 취급 시 금리우대 지원 중

(하나은행) 여신지원 시 0.3% 금리우대

- 기관명_ 하나은행
- 부서명_ 기업사업지원부
- 연락처_ 02-2002-1646



관련규정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상 금리 우대 기준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하나은행 내규상 여신 취급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지원 시 최대 0.3% 금리우대
- 지원한도: 별도 제한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여신 승인일부터 만기 시까지



지원절차

- 일반적인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 지속 운용(내부 전산시스템 반영)

(신용보증기금)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 기관명_ 신용보증기금
- 부서명_ 신용보증부
- 연락처_ 053-430-4358



관련규정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 60점 이상인 기업 (다만, ①, ②, ⑧, ⑩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를 면제)

- ① 최근 2년 내 정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금을 받은 기업
- ② 최근 2년 내 국가·지자체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③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 ④ 최근 2년 내 사업장을 외국에서 국내로 이전한 기업
- ⑤ ‘12대 국가전략기술’,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등에 해당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 후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
- ⑥ 최근 2년 내 고용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
- ⑦ 최근 1년 내 정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 ⑧ 최근 6개월 내 신용보증기금의 ESG 경영 역량기업군 I 군, II 군으로 산출된 기업
- ⑨ 최근 3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 ⑩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설정한 중소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보증료율 우대(0.2%p 차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보증취급일로부터 5년



지원절차

- 보증신청 > 보증상담 > 신용 조사 및 심사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한국씨티은행) 고용창출우대기업 여신금리 우대 등

- 기관명_ 한국씨티은행
- 부서명_ 커머셜사업지원부
- 연락처_ 02-2124-3539



관련규정

- (MME, SME) 기업고객 여신금리 및 수수료 세척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한국씨티은행 내규상 여신 취급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지원 시 0.2% 이내 금리 감면(우대)
- 지원한도: 별도 제한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여신취급일로부터 해당여신 만기일까지



지원절차

- 통상의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향후 추진계획

-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속 우대지원 예정

(한국예탁결제원)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7개 서비스 수수료 면제

- 기관명_ 한국예탁결제원
- 부서명_ 경영전략부
- 연락처_ 051-519-1499



관련규정

- ①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②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③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④전자위임장권유관리등에관한규정, ⑤법인식별기호발급 및 관리지침, ⑥증권정보이용계약서, ⑦해외증권대리인계약서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권대행기본수수료, 발행등록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면제
- 단, 발행등록수수료의 경우 채권, CD, 단기사채, ELB, DLB 발행분에 한함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해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신규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1년간 면제
- 지원기간: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3개년)
※ '26년 이후 일자리 으뜸기업 수수료 면제 지원기간 연장 여부는 미정으로 추후 확정



지원절차

- 한국예탁결제원은 매년 8월 말 일자리 으뜸기업 명단을 갱신하며, 9월부터 대상기업 수수료 면제 자동 시행
- 면제기간 중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면제 자동 중단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 기관명_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부서명_ 방송광고정책과
- 연락처_ 02-2110-1274



관련규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29개 인증) 중 1개 이상 보유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방송광고 제작비(TV: 제작비 50% 지원, 최대 4,500만원 / 라디오: 제작비 70% 지원, 최대 300만원) 및 방송광고 원스톱 컨설팅 지원
- 사업 참여 신청 자격: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일자리창출 으뜸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보유기업
- 가점부여: 일자리 우수 기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우수기업, 1년 미만 신생 중소기업, AI인증 기업
-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舊, 청년친화 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 (가점)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2018~), 비수도권 기업(2021~)
 - (신청자격)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일자리창출 으뜸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2026년~)
- * 신청 마감일 기준 인증 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지원절차

- 지원공고 및 신청 → 심사 및 선정 → 방송광고 제작(방송광고 컨설팅 지원) → 방송광고 송출 → 방송광고 소재제작비 검증 및 지원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 대상 지속적인 우대지원 예정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 부처명_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기관명_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부서명_ 중소기업전략팀
- 연락처_ 02-731-7321



관련규정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 운영지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지원대상 및 요건

- 「국가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 교육감, 하급 교육 행정기관 포함)」가 인증한 일자리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의청년친화 강소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강소기업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중 중소기업
- * 지원신청일 이전 최근 6개월 간 지상파 전국권 방송광고 집행이 없는 기업에 한함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상파TV, 라디오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250% 보너스 지원
- * 지원대상매체: 지상파TV(KBS, MBC, EBS), 라디오(KBS AM/FM, MBC AM/FM, CBS AM/FM, BBS FM, CPBC FM, FEBC, YTN FM, TBS, iFM(경인방송), WBS, 기타(지상파DMB, KBS-World)



지원기간

- 지원기간: 최초 방송광고 계약 이후 3년(선정 이후 1년 이내 계약 필수)



지원절차

- 제출서류 구비 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에서 사업 신청
- * 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 참고
- * 매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후 익월 초 선정(연간 지속 사업)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대상 지속적인 우대지원 예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4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서명_ 창업·사업화실
- 연락처_ 032-540-2140



관련규정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4, [별표 4]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창출 우수기업(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등록)에 선정평가 가점(1점) 부여
- *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사업화)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자금 및 컨설팅 지원(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8개월)
- (녹색신산업) 에너지전환 및 순환경제 등 녹색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 지원(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2개년)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8개월(사업화), 2개년(녹색신산업)



지원절차

- 사전검토 → 사전·발표평가 → 전담기관조정 → 최종선정평가
- 사업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발표평가 결과 65점 이상 취득 과제 대상 가점(1점) 부여



향후 추진계획

- '27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26.12월~'27.2월)

해외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서명_ 해외사업실
- 연락처_ 032-540-2175



관련규정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10] 가점 및 감점 기준



지원대상 및 요건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국내 환경산업체 중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선정·등록된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고용창출 우수기업(고용노동부)으로 선정·등록된 기업에 선정평가 가점(1점) 부여
※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지원기간: 사업 신청 시점 및 협약체결 기간(사업별 상이)



지원절차

- 사업신청 및 관련자료 제출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전문기관조정 → 최종선정
- 사업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향후 추진계획

환경기술 해외 현지 실증 지원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서명_ 해외사업실
- 연락처_ 032-540-2178



관련규정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26.1.16.)



지원대상 및 요건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중앙부처·자치단체에서 인증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
-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포함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신규과제 선정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은 가점 1점 부여
- *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실적에 한하여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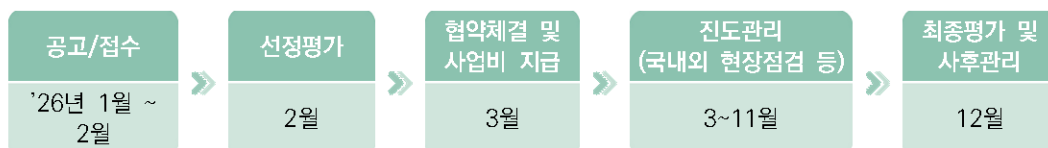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지원기간: 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 시점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신규과제 선정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등록 기업 가점 지속 부여

혁신형 물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한국환경공단
- 부서명_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화처
- 연락처_ 053-601-6103



관련규정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험·검사 업무 지침」 제13조(테크업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요건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테크업 프로그램 대상기업 선정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등록) 평가 가점(1점) 부여
- *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등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기술지원	재료시험	• 제품·기술의 물리적·기계적 특성 검증을 통한 품질향상과 성능개선
	수질분석	• 수질 특성을 평가하여 제품·기술의 성능검증 지원
	측정기기	• 측정기기의 사전 적합성평가를 통한 성능검증 및 인증취득 지원
	실증지원	• 물기업 개발 기술·제품의 실규모 실증시험 지원
국고보조금 (비용지원)	플랜트	• 파일럿 플랜트 설치·철거 비용 등
	시제품	• 금형, 시편 제작비용, 시제품 설계 모델링 비용 등
	인·검증 및 특허	• 국내외 인·검증 및 특허 취득 관련 수수료 등

※ 클러스터에서 수행하는 시험·분석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당해년 12월 31일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공고) 물기업 제품·기술 향상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25.3.17.~4.25.)
- (선정) 위원회를 통한 대상기업 5개사 선정('25.5. 예정)

용역, 물품 및 공사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부처명_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관명_ 한국전력기술(주)
- 부서명_ 조달처
- 연락처_ 054-421-5892



관련규정

- 일반용역·물품·공사 적격심사기준

대상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기준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8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table><tr><th>대기업</th><th>중견기업</th><th>중기업</th><th>소기업 및 소상공인</th></tr><tr><td>7% 이상</td><td>8% 이상</td><td>9% 이상</td><td>11% 이상</td></tr><tr><td>6% 이상</td><td>7% 이상</td><td>8% 이상</td><td>9% 이상</td></tr><tr><td>5% 이상</td><td>5% 이상</td><td>5% 이상</td><td>5% 이상</td></tr></table>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9%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8%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3.0 2.0 1.0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9%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8%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8개월 미만)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1.5 1.0																		
☐ 고용우수 인증기업(정부, 지자체에서 고용우수 인증한 기업)	1.5																		
물품 적격 심사 기준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table><tr><th>대기업</th><th>중기업</th><th>소기업 및 소상공인</th></tr><tr><td>7% 이상</td><td>8% 이상</td><td>11% 이상</td></tr><tr><td>6% 이상</td><td>7% 이상</td><td>9% 이상</td></tr><tr><td>5% 이상</td><td>5% 이상</td><td>5% 이상</td></tr></table>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3.0 2.0 1.0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공사 적격 심사 기준	일자리창출 기업 (종합공사 신인도 평가)	☐ 최근 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 신인도평가 심사 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23)에 따름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24)에 따름	-																
	일자리창출 기업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신인도 평가)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24)에 따름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인천광역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 기관명_ 인천광역시
- 부서명_ 산업창업정책과
- 연락처_ 032-440-4252



관련규정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제조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무역업, 건설업, 관광업 등
 - * 어르신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시)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업체(시 및 중앙정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유효기간 내)
- 지원요건: 고용유지, 신규 고용 창출시 융자 지원한도 및 이차차액 우대지원
 - ⇒ 지원 도중 고용유지가 중단 된 경우 기본한도 초과 대출부분 이차보전 지원 중지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어르신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대 10~55억원(이차보전 0.5%~1.0% 우대지원)
 - ⇒ 고용인원 10명 이상,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증가율 5~15%이상 증가, 어르신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 ※ 일반기업: 10억원 이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매년 1월 ~ 재원 소진 시
- 지원기간: 융자기한별 1년, 2년, 3년



지원절차

자금신청
(기업 → 인천테크노파크)



심 사
(인천테크노파크)



자금추천
(인천테크노파크 → 기업)



대 출
(은행 → 기업)



향후 추진계획

- 지속 시행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 시 우대

- 기관명_ 인천광역시
- 부서명_ 산업창업정책과
- 연락처_ 032-440-4282



관련규정

- 2025년 수출지원 종합계획



지원대상 및 요건

- 인천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된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세부 사업별 기준 상이)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가점 2점
- 대상사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단체(개별)참가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기업광고, 해외시장 개척단 등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지원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사업공모 신청 시 인증서 제출 → 평가 → 선정



향후 추진계획

- 지속 시행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관내 중소(중견)기업 8개 업체
- 일자리 창출(으뜸): 우대가점 1점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중소기업 진단을 통한 대상기업 선정
 - 전체 참여기업 추진자 워크숍 등 연합 교육
 - 개별기업에 대한 현장 개선 프로젝트 해결 OJT 실시
- ※ 지도기관: 한국표준협회(인천지역본부)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지원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사업공모 신청 시 인증서 제출 → 평가 → 선정



향후 추진계획

- 지속 시행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서명_ 창업진흥과
(광주신용보증재단)
- 연락처_ 062-950-0035



지원대상 및 요건

-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우대: 일자리 으뜸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신용보증료 0.2%p 감면
(예시: 산출된 보증료가 1.2%인 경우 0.2%p 감면된 1.0%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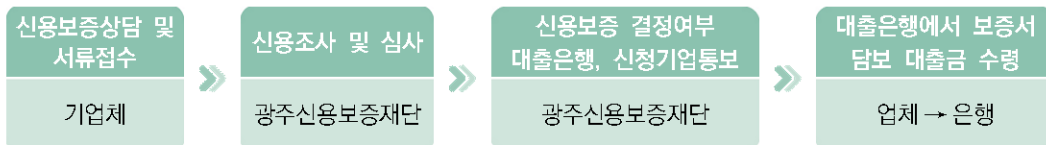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지원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기간 내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 상시지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대전광역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50

해외 온라인 마케팅 가점 부여

- 기관명_ 대전광역시
- 부서명_ 기업투자유치과
- 연락처_ 042-270-3731



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前 고용창출 우수기업) 종사자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참가업체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 해외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이베이 등) 입점 지원 및 기업 직영 해외 온라인쇼핑몰 운영 지원 (지원한도: 350만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지원기업 선정 정량평가 시
- 지원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신청 → 참가업체 선정(가점부여)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향후 추진계획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신청 시 확인 후 가점 부여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가점 부여

- 기관명_ 대전광역시
- 부서명_ 기업투자유치과
- 연락처_ 042-270-3732



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신청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참가업체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비용(부스 임차료 등)의 80% 지원(지원한도: 700만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지원기업 선정 정량평가 시
- 지원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 신청 → 참가업체 선정(가점부여)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향후 추진계획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 신청 시 확인 후 가점 부여

52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가점 부여

- 기관명_ 대전광역시
- 부서명_ 기업투자유치과
- 연락처_ 042-270-3732



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참가 신청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참가업체 신청 시 가점(1점) 부여
-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인증비, 시험비 등)의 80% 지원(지원한도: 1,400만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지원기업 선정 정량평가 시
- 지원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가 신청 → 참가업체 선정(가점부여)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향후 추진계획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가 신청 시 확인 후 가점 부여

- 기관명_ 대전광역시
- 부서명_ 기업투자유치과
- 연락처_ 042-270-3733



관련규정

- 국내 제품인증 획득지원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 중 국내 제품인증 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지원기업 수

- 17개사 내외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선정평가시 가산점 1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지원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유효기간(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국내 제품인증 획득 지원 참가 신청 → 참가업체 선정(가점 부여) → 국내 제품인증 획득 지원



향후 추진계획

- 국내 제품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가 신청 시 확인 후 가점 부여

54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가점 부여

- 기관명_ 대전광역시
- 부서명_ 국제통상담당관
- 연락처_ 042-270-3362



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1천만불 이하) 중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신청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참가업체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 기업·제품 외국어 홍보 동영상 또는 브로슈어 제작비의 80% 지원
(지원한도: 동영상 900백만원, 브로슈어 400만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지원기업 선정 정량평가 시
- 지원기간: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참가 신청 → 참가업체 선정(가점부여) →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참가 신청 시 확인 후 가점 부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울산광역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55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기관명_ 울산광역시
- 부서명_ 세정담당관
- 연락처_ 052-229-2632



관련규정

- 「울산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9조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고용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세무조사 유예
- 지원한도: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유예
 - ※ 단,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



지원절차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 지원절차: 우수기업체 → 세무조사 담당 부서(시, 구·군) 신청·심사



적용배제

- 산업재해 등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등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세종특별자치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56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

- 기관명_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명_ 기업지원과
- 연락처_ 044-300-4822



관련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경영안정자금 우대조건 대상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이차보전 1% p 추가 적용



지원대상 및 요건

-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29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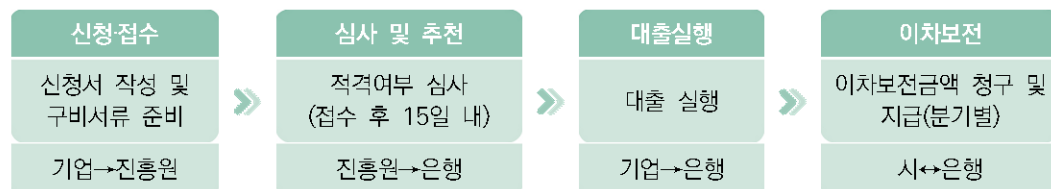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자금종류	지원규모	기업 대출금리	대출기관	한도 및 상환 기간
경영안정	280억원	은행-기업간금리 (2~3%p 이차보전)	12개 협약은행	(한도) 5~10억 (상환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 일반기업 2%p, 우대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 3%p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이 경영안정자금 신청시 1회에 한해 우대 지원



지원절차



※ 경영안정자금 심사 및 추천업무 위탁(위탁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향후 추진계획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신청시 이차보전 우대(3%) 지원 적용

- 기관명_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명_ 기업지원과
- 연락처_ 044-300-4843



관련규정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최근 3년 이내 선정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세종시 일자리 창출 유공 선정심사 시 가점부여



지원절차

- 일자리 창출 유공 신청(기업 → 사업수행기관) → 선정심사 시 가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26년 일자리 창출 유공 선정심사(10월) 시 으뜸기업 여부 확인 후 가점 부여

58

고용환경개선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가점 부여

- 기관명_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명_ 기업지원과
- 연락처_ 044-300-4844



관련규정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최근 3년 이내 선정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세종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가점부여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고용 촉진
 (사업내용) 사업주가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 임차비 등 지원
 (지원규모) 2개사
 (지원금액) 월 최대 250만원 × 2개사 × 8개월=4,000만원
 분기별 최대 750만원 한도 지원가능, 신청금액의 80%이내 지원



지원절차

-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신청(기업 → 사업수행기관) → 선정심사 시 가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시 으뜸기업 여부 확인 후 가점 부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경 기 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59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경기도
- 부서명_ 지역금융과
- 연락처_ 031-8008-6134



관련규정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및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업체
- * 다만, 휴·폐업 중인 기업 등 지원 제외기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 부여(5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인증) 시
- 지원기간: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



지원절차



* 협약 체결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산협,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아이엠뱅크, 새마을금고



향후 추진계획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속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 우대

- 기관명_ 경기도
- 부서명_ 지역금융과
- 연락처_ 031-8008-6134



관련규정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 다만, 휴·폐업 중인 기업 등 지원 제외기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추가 금리 할인 및 추가이자보전을 지원
 - ▶ (기금융자) 경기도 고시금리 - 추가 금리 할인(0.3%p)
 - ▶ (협조융자) 은행금리 - 기본 이차보전을 - 추가이자보전율(0.3%p)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
- 지원기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인증일로부터 2년)



지원절차



* 협약 체결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아이엠뱅크, 새마을금고



향후 추진계획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속 지원

61

보증평가(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및 보증요율 우대

- 기관명_ 경기신용보증재단
- 부서명_ 보증금융부
- 연락처_ 031-690-3545



관련규정

- 보증심사 운용요령
- 보증료 운용요령



지원대상 및 요건

- 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단, 보증제한 기업이 아닐 것)



지원수준 및 한도

- 기업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1점)
- 보증료율 인하(0.2%)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절차

- 사업장 관할 재단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목적의 보증상품 개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강원특별자치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62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명_ 일자리청년과
- 연락처_ 033-249-3241



관련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도내 소재 2년 이상(이전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전업종(일부제외))
또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그 외지역) 이상인 기업 ※ 세부내용은 사업 공고 참고
- * 선정방법: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분야 등을 평가하여 9개 기업 선발(대상 1, 우수 7, 특별 1)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일자리대상 트로피 수여 및 수상기업 방송 홍보, 고용환경개선사업 참여 우대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해외시장개척 사업 우대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 인증유효한 도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이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 시
정량평가 가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선정 시
- (지원기간) 제한없음. 단, 지방세 세무조사는 선정일로부터 3년 유예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정성평가(서면): 5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선정: 5월말
- 시상식 개최: 7월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명_ 일자리청년과
- 연락처_ 033-249-3241



관련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제6조



지원대상 및 요건

- 도내 소재 2년 이상(이전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전업종(일부제외))
※ 세부내용은 사업 공고 참고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사업규모: 30개 기업 내외(시군별 1개 이상)
- 기업별 고용(근로)환경개선지원 최대 25백만 원(도비 10, 시군비 10, 기업부담 5)
* 재원부담: 도 40%, 시군 40%, 자부담 20%
※ 인증유효한 도내 '옴통기업'이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 정량평가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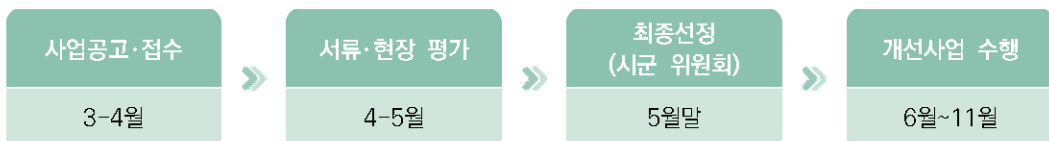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
- (지원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적인 경우, 가점 부여(단, 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한 경우 인정)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시군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정성평가: 5월
- 시군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최종선정: 5월말
- 개선사업 수행: 6~11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4

강원특별자치도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명_ 기업지원과
- 연락처_ 033-249-2757



관련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도내에 소재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구분	백년기업	유망중소(신규)	유망중소(재인증)
업력	20년	2년	
업종	전 업종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 관련업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5인 이상(최근 2년 평균)	
유효기간	-	5년	3년(재인증 1회 가능)

※ 사업공고 시 세부내용 참고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자금우대) 도 및 한국은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참여우대) 도 및 도 경제진흥원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인증서 및 현판 제공, 심볼마크 사용권 부여 등
- ※ 인증유효한 도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이 강원특별자치도 백년·유망중소기업 신청 시 정량평가 가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 선정 시(인증일)
- (지원기간) 백년기업(제한없음), 유망중소기업(최초 5년, 재인증 3년)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기업 → 시·군) → 자체평가(시·군) → 서류심사(도) 및 현지 실사 → 평가·선정(도)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도)



추진일정

- 강원특별자치도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및 접수: 5~6월
- 강원특별자치도 백년·유망중소기업 신청서류 및 현지 심사: 7~8월
- 강원특별자치도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인증현판 수여: 9~10월

※ 본 내용은 전년도 사업내용으로 당해연도 사업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충 청 북 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신청기업 가점 부여

- 기관명_ 충청북도
- 부서명_ 국제통상과
- 연락처_ 043-220-3471~5



관련규정

- 「대외무역법」,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 및 농식품 수출진흥시책 종합추진계획(연 1회)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 도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우대요건) 충청북도 고용우수 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유효기간 내)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업화시책 신청기업 평가 시 가점 부여
 -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상품전, 국내상담회, 수출바우처, 외국어 종합홍보물 제작 등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개별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지원 대상기업 평가·선정 시 적용
- 지원기간: 2026년 1월~12월



지원절차

- 충북글로벌마케팅 시스템(CBGMS)홈페이지 신청 접수 → 평가 및 선정(가점부여) → 사업 참여



향후 추진계획

- 2026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 및 참여기업 지원(연중)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경 상 북 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66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 기관명_경상북도
- 부서명_기업지원과
- 연락처_054-880-2681



관련규정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1항 및 제11조 1항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 3항
- 중소기업운전자금 세부운용계획(매 연도별 수립 및 공고)



지원대상 및 요건

- 경상북도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 * 공장등록이 되어 가동중인 제조업체
 -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운수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 정비업,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 *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구,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일반업체: 매출액에 따라 3억원까지 융자지원, 이차보전 2~5%(1년간)
 - ※ 연간 매출액 3억미만 200백만원, 30억미만 250백만원, 30억이상 300백만원
- 우대지원: 연간 매출액 한도로 5억원까지 융자지원, 이차보전 2~5%(1년간)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2015년도 자금지원 시부터 적용,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절차

- 운전자금 세부운용계획 수립(도) ⇨ 융자지원 신청 및 접수(업체, 시·군) ⇨ 사실 확인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 융자추천결정(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대출실행(은행, 업체) ⇨ 이차보전금 신청(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도, 시군)



향후 추진계획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한도 우대를 통해 해당업체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업체 우선 선정

- 기관명_ 경상북도
- 부서명_ 외교통상과
- 연락처_ 054-880-2734



관련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조, 경상북도일자리창출촉진지원조례 제5조,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5조



지원대상 및 요건

- 도내 수출 우수 중소기업(본사나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체)
※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업체 우선 선발·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 무역사절단 파견: 행사운영(상담장 임차,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통역 등), 편도 항공료(업체당 1명)
- 해외전시회 참가: 전시장 부스 임차 및 장치, 통역, 전시품 편도운송 등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당해연도 1월 ~ 12월(우수기업 선정일 이후) ※ 사업 참가신청서 제출



지원절차

-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공문 협조공문 접수(고용노동부 → 경북도 외교통상과)
- 수출 유관기관(보조사업자) 협조공문 발송
 - 주요내용: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추천)



향후 추진계획

-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업체 대상 경북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가점 부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68

모범 납세기업 세무조사 유예

- 기관명_ 경상북도
- 부서명_ 세정담당관
- 연락처_ 054-880-2210



관련규정

-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1조



지원대상 및 요건

- 조례에 따라 모범 납세자·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
-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고용창출 100대 기업 중 중소기업
- *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우수기업 선정일부터
- 지원기간: 3년간



지원절차

- 우수 중소기업 선정(도) ⇨ 세무조사 계획시 반영(세정담당관) ⇨ 세무조사 유예



향후 추진계획

- 우수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통해 별도 누락법인이 없도록 조치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운 모범 납세기업과 지방세 정보 상호교환 추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경 상 남 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69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기관명_ 경상남도
- 부서명_ 세정과
- 연락처_ 055-211-3744



관련규정

-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제14조)



지원대상 및 요건

-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 중 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舊, 고용창출 100대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선정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원절차

- 우수기업 선정 통보(고용노동부, 경상남도 산업인력파) →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명단 확인 →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 기관명_ 경상남도
- 부서명_ 경제기업과
- 연락처_ 055-211-3334



관련규정

- 「2026년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개별 특화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신청 시 우수기업 유효기간 내 해당 시 적용



지원절차

-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신청 시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 → 업체 선정 시 우수기업 여부 확인 → 가점부여 → 선정 여부 통보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지속 시행 예정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이용 단체할인 혜택 제공

- 기관명_ (재)경남로봇랜드재단
- 부서명_ 경영관리팀
- 연락처_ 055-214-6014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前 고용창출 우수기업)
- * 단체 할인 15명 이상 이용 시 적용 가능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구분	정상가	할인가	할인율
성인	38,000	21,000	약 45%
청소년	34,000	19,000	
어린이	30,000	17,000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6. 5. 1.~
- 지원기간: 기업별 협의



지원절차

- 경남마산로봇랜드 파크마케팅팀 협의
- 단체 이용 할인 제공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회신
- 유관기관 협의 통한 이용 안내 및 할인 제공 등

II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제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재정경제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재정경제부
- 부서명_ 조세특례제도과
- 연락처_ 044-215-4132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지원대상 및 요건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기본공제)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단위:만원)		중소(3년간)		중견(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분(단위:만원)	중소(1년간)	중견(1년간)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적용시점 및 사후관리

- 적용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 추가공제 사후관리: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지원절차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신청서, 공제세액 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



향후 추진계획

- 제도 운영 및 성과점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지원대상 및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할 것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중소기업 세액공제액 = (임금감소분 × 10%) + (임금보전분* × 15%)
 - * 근로시간 단축 비율만큼 임금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보전분(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 근로자 소득공제액 = 임금감소분 × 50% (한도 1,000만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지원기간: 해당 과세 연도



지원절차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등 제출



향후 추진계획

- 제도운영 및 성과점검

(한국수출입은행)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기관명_ 한국수출입은행
- 부서명_ 여신총괄부
- 연락처_ 02-3779-6331



관련규정

- 중소기업 지원세칙(한국수출입은행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업별 내국인 고용자 수 기준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 수 증가율이 1%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고용증가 수준에 따라 대출*이율 우대(최대 $\Delta 1.0\%$ p) 및 대출**금액 증액(최대 수출실적의 90% 범위 내) 허용
 - * 수출관련대출 및 수입자금대출 한정
 - ** 대출기간 1년 이상인 수출성장자금대출 한정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고용자 수 증가율 요건 충족이 확인된 시점
- 지원기간: 위 시점으로부터 6개월 또는 대출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대출금액 증액은 잔여 대출기간 동안 적용하되, 연장된 대출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지원절차

-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우대지원조건 등을 대출거래약정서에 반영하고, 최초 대출집행일 및 매 이자 기산일에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업별 고용정보를 확인하여 지원여부 결정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대지원 할 예정

(한국수출입은행) ESG 경영 실천기업 지원 프로그램

- 기관명_ 한국수출입은행
- 부서명_ 여신총괄부
- 연락처_ 02-3779-6331



관련규정

- ESG 경영 실천기업 지원 프로그램(한국수출입은행 ESG 금융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요건

- ESG 경영 인증 및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ESG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한 개수에 따라 최대 1.0%p 금리 우대

구 분		차감한도	
프로그램	인증개수 ^{주)}	중소기업	중견기업
ESG 경영 실천기업 지원 프로그램	1개	△0.5%p	△0.3%p
	2개	△0.8%p	△0.4%p
	3개 이상	△1.0%p	△0.5%p

주) 가족친화기업 인증, 친환경기업인증(A 이상), 사회적기업, Social Impact 우수기업(A 이상), RE100참여기업, 지배구조 우수기업(A+ 이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요건 충족개수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대출승인신청 접수일
- 지원기간: 최초 대출집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



지원절차

- 대출승인신청서 접수 시점에 고객기업의 ESG 관련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 적용한 금리를 대출거래약정서에 반영하고 최초 대출집행일부터 지원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ESG 관련 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대지원 할 예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국 방 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공사 입찰 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 기관명_ 국방부
- 부서명_ 재정회계담당관실
- 연락처_ 02-748-5367



관련규정

-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 3]



지원대상 및 요건

평가요소	등급	평점	비고
일자리 창출관련 사항	20) 최근년도 건설공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3	
	- 2등급인 자	2	
	21)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 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 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5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아니함
-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0)과 21)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외에는 21)로 평가

* B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

※ 상기 내용은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참조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해 배점한도 (+2.5)를 부여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
-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가산점 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적용, 신인도 평점을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평가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훈령 시행일
- 지원기간: 규정 개정 시까지



지원절차

-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 시 신인도 평점에 반영(배점 한도 이내)



향후 추진계획

- 법률 개정 등 정부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제도 개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문화체육관광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콘텐츠 지원사업 가점 부여

- 기관명_ 문화체육관광부
- 부서명_ 문화산업정책과
- 연락처_ 044-203-2420



관련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도 개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콘텐츠 지원사업에 대해, 선정평가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평가지표로 1점 배점

- (대상사업)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①인건비 편성 제작지원사업 ②참여인력이 입주하는 입주지원사업에 해당
- (평가방법) 정성 지표로 평가위원이 평가

- 계획서에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정성평가 실시
(업무, 기간, 인원 항목은 필수 포함하며, 기타 항목은 조정 가능)



예시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구분	수행업무	고용형태	프로젝트 참여기간	참여율	인원
주관기관	디자인	정규직	YY.MM. ~ YY.MM	100%	1
주관기관	개발	비정규직	YY.MM. ~ YY.MM	50%	1
참여기관	연구	정규직	YY.MM. ~ YY.MM	50%	1
...					...
합계					3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사업 선정 시,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에 필요한 자금 지원(지원 한도는 지원사업별 상이)

- 참가기준('26.4.7. 기준)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 불가함

1.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6.1월 ~
- 지원기간: 최종 선정 후 개별 과제마다 체결한 협약기간



지원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공고 후 접수과제 대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과제선정



향후 추진계획

- 콘텐츠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시 적용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산업통상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폐광지역 중소기업 대상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혜택지원

- 부처명_ 산업통상부
- 기관명_ 한국광해광업공단
- 부서명_ 대체산업팀
- 연락처_ 033-736-5776



관련규정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산업부 고시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 산업 육성계획」및 공단 규정 시행세칙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 폐광지역 7개 시·군 소재, 당해연도 용자 수혜기업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 4대 사회보험(고용) 사업장가입자 명부에 당해연도(12.31일) 신규가입자 중 정규직 인원수
- 기준: 기업 고용 목표치 달성 기업중 신규 고용창출 10인 이상인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수준(내용)

-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우수기업은 용자금 재신청 시 가점 부여(3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용자금을 지원받은 당해연도 이후 최근 1년간 1회 적용



지원절차

- 당해연도 신규고용 실적자료 요청(사업종료 후 차년도 1월) → 일자리창출 달성 및 우수기업 선정(1~2월)



향후 추진계획

- 사업종료 시까지 일자리창출 달성 및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지속

지역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규고용 추가인센티브) 추가지원

- 기관명_ 산업통상부
- 부서명_ 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_ 044-203-4429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및 요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사업이행기간(5년) 모든 해에 당초 계획한 신규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초과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1~5% 지급(최대 10억원 한도)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5명 이상 1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1%p
10명 이상 2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4%p
4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p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기간(5년) 종료 후
- 지원기간: 상시



지원절차

- 기업이 사업이행기간(5년) 종료 후 지자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
- 고용초과여부 검증 후 지자체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신규고용 추가인센티브) 지급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부처명_ 산업통상부
- 기관명_ 한국가스공사
- 부서명_ 동반성장부
- 연락처_ 053-670-0394



관련규정

-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 추진계획



지원대상 및 요건

-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대구·경북 소재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 * 전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된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기업당 최대 4억원 지원
- 최대 3.40% 대출이자 감면(기본감면 2.00%, 개별신용도에 따른 추가감면 최대 1.4%)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적용되며 1년마다 연장하여 최대 4년간 지원



지원절차

상담	추천신청	추천결정 통보	대출실행
고객 → 은행	고객 → 가스공사 → 은행	가스공사 → 은행	은행 → 고객



향후 추진계획

- 지속 시행 예정

중소협력사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

- 부처명_ 산업통상부
- 기관명_ 한국가스공사
- 부서명_ 동반성장부
- 연락처_ 053-670-0252



관련규정

-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 추진계획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한 중소기업 중 영세기업(매출액 규모) 순으로 모집하되,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 * 전년도 12.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대비 사업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기업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출액 기준 10위 내 해당 시 우선 선정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월 분담분 중 10만원 공사 지원(5년간 600만원)
 - * 5년간 근로자 600만원 + 중소기업 1240만원(중소기업 순 분담 840만원 + 공사 분담 600만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 매월 분담분 중 7~8만원 공사 지원(3년간 276만원)
 - * 3년간 근로자 600만원 + 중소기업 600만원(중소기업 순 분담 324만원 + 공사 분담 276만원) + 정부 600만원



지원기간

- (내일채움공제) 최초 지원부터 5년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최초 지원부터 3년간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지원기업 선정	선정통보 및 지원금 교부	지원금 집행
중소협력사 → 공사	가스공사 → 선정기업	가스공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 선정기업



향후 추진계획

- 내일채움공제 지속 시행 예정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폐지('24년)되었으나 지원 중인 기업은 남은 기간까지 계속 지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일자리 창출 환경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개선 지원

- 기관명_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서명_ 기업육성실
- 연락처_ 032-540-2216



관련규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지원대상 및 요건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선정*한 환경 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 * 일자리 양적·질적 성장성, 환경개선 기여도,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 사회적 가치 실현 등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5개사) 및 기술원장상(5개사) 수여
- 업종별 맞춤형 노무, 경영, 환경 컨설팅 지원
- ESG 친환경대전 연계 으뜸기업 홍보관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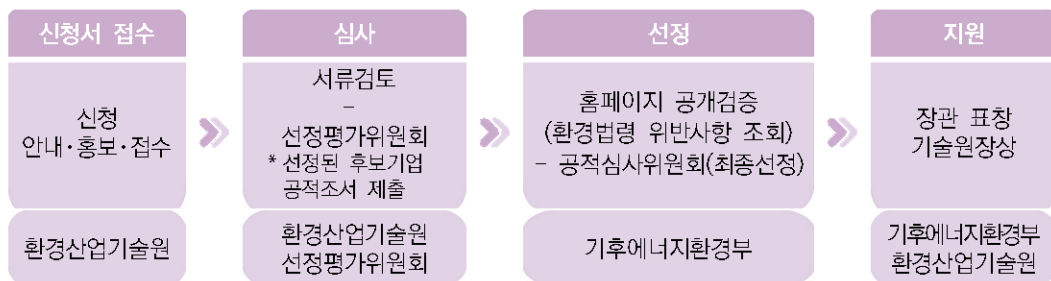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환경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해당연도 지원



지원절차

- 공고·접수 → 심사(서류검토, 후보선정 평가) → 선정(결격사유 검증/공적심사) → 지원



향후 추진계획

- 매년 환경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지속 추진
- ※ '26년 공고 및 접수: 7월 공고 예정

신규 고용창출기업에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에 대한 가점 부여

- 기관명_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서명_ 해외사업실
- 연락처_ 032-540-2179/2193



관련규정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5] 가·감점 평가표



지원대상 및 요건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국내 환경산업체 중 신규 고용 인원이 있는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사업 수행기업 선정 시, 전년 기준 신규 고용 인원이 있는 기업 가점 부여(전년도 신규 고용인원 중 정규직이 50% 이상 2점, 30% 이상 50% 미만 1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사업 신청년도의 전년 말일 기준
- 지원기간: 사업 신청 시점



지원절차

- 사업 신청시 전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향후 추진계획

- 수행기업 선정 시, 신규 고용 가점(1~2점) 지속 부여

환경 일자리창출 으뜸기업에 대한 환경정책자금 우선지원 가점 부여

- 기관명_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서명_ 기업육성실
- 연락처_ 032-540-2202



관련규정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7조제1항 [별표 3]



지원대상 및 요건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에 환경정책자금 우선지원 순위평가 가점 3점 부여
-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내용): 필요자금 저리 대출 5년(운전자금) 또는 10년(시설자금)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대출금리: '26.3분기 1.80%~2.80%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융자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표창을 득한 경우



지원절차

- 융자신청 시 해당 표창 등 확인 후 가점(3점) 인정
-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에서 온라인 융자신청서 작성



향후 추진계획

- '26년 융자신청 접수: 상시 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 카카오톡 채널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채널 친구 추가 시 관련 정보 알림

우수환경산업체 발표평가 시 일자리창출 유망기업 우대

- 기관명_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서명_ 기업육성실
- 연락처_ 032-540-2205



관련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별표 1]



지원대상 및 요건

-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 중 신규 고용 창출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우수환경산업체 신청기업 발표평가 시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 평가(100점 중 20점)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0)

현장적용성 및
기술보호 수준
(20)

녹색제품/환경기술
활용가능성 및 시장성
(20)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20)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20)

※ 최근 2년 평균 고용증가율(5), 신청일 직전 월말 고용인원(5),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10)

- 우수환경산업체 브랜드 제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기업 지원사업 인센티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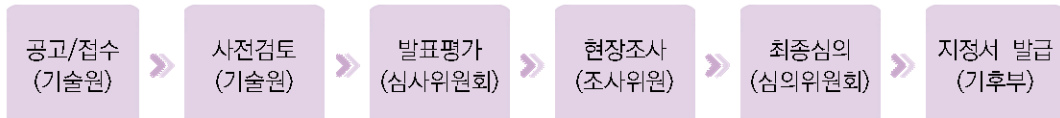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우수환경산업체 모집공고 및 접수(5월)

고용 친화형 환경 R&D 신진연구자 지원

- 기관명_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서명_ 기술산업기획실
- 연락처_ 02-2284-1311



관련규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지원요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환경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 R&D 지원금(총액 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정부납부 기술로 감면 연계 채용: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환경 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만큼을 감면
- 민간부담현금 감면 연계 채용: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기업이 매칭하는 민간 부담현금을 채용인력의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연구과제의 성격 및 내용 등에 따라 시점, 기간 등이 상이함
※ 관계기관 간 적용내용 조정을 통해 지원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고용 친화형 환경 R&D 지원을 통한 신규인력 고용 창출(~계속)



관련규정

- 「K-water 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



지원대상 및 요건

평가요소	등급	평점	비고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정규직 사용)*	☐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고용창출우수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 일자리창출 실적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손익계산서 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 보다 증가한 경우	3 2 2.5 0.5	
여성, 중소기업 참여도	☐ 중소기업 참여비율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여성기업 참여비율 10% 이상	1 1.5 2 2	
근로여건 개선노력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5	

* (정규직 사용)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이 종합건설업종의 기준 비중보다 낮은 경우 비중에 따라 신인도 가점 부여

-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고용형태 공시 대상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신인도 가점은 계약이행능력(기술능력)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서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의 범위 내에서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17.12.13. 이후 「K-water 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의할 경우(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의 경우 '19.01.08. 이후 적용, 고용창출 우수 및 근로여건 개선노력의 경우 '20.03.18. 이후 적용)
- 지원기간: 규정 개정 시까지



지원절차

-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 시 신인도 평점에 반영(배점 한도 이내)



향후 추진계획

-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및 추가 지원방안 마련 검토

공사·용역 및 물품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기관명_ K-water
- 부서명_ 재무관리처 계약부
- 연락처_ 042-629-2724



관련규정

- 「K-water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 1-1][별표 1-2][별표 1-3]
- 「K-water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신인도 평가
- 「K-water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신인도 평가
- 「K-water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신인도 평가



지원대상 및 요건

- 건설인력고용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평가
- 고용우수, 근로여건 개선 노력,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일반, 고난도	간이형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탄력성 등급에 따라 평가		
		- 1등급	1.0	0.3
		- 2등급	0.92	0.24
		- 3등급	0.84	0.18
		- 4등급	0.76	0.12
		- 5등급	0.68	0.06
		- 6등급	0.60	0
	근로기준법 준수*	☐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 1~2건	0.08	0.08
		- 3~4건	0.16	0.16
		- 5~6건	0.24	0.24
		- 7~8건	0.32	0.32
		- 9건이상	0.4	0.4

* 근로기준법준수 심사점수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심사점수 범위 내에서 감점

[공사 적격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①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우수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3
		- 2등급인 자	2
		☐ 일자리창출 실적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 손익계산서 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 보다 증가한 경우	0.5
② 근로 여건개선	근로여건 개선노력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5

[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①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우수	☐ 창업기업이거나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1.0												
		☐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8개월 이상)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1.5 1.0 0.5												
		<table><tr><th>대기업</th><th>중기업</th><th>소기업 및 소상공인</th></tr><tr><td>7% 이상</td><td>8% 이상</td><td>11% 이상</td></tr><tr><td>6% 이상</td><td>7% 이상</td><td>9% 이상</td></tr><tr><td>5% 이상</td><td>5% 이상</td><td>5% 이상</td></tr></table>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 신설기업(설립 18개월 미만)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1.0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0.5														
②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5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 40% 이상	0.5												
		- 30% 이상 ~ 40% 미만	0.4												
		- 20% 이상 ~ 30% 미만	0.3												
		- 10% 이상 ~ 20% 미만	0.2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이거나 사회적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1.0
		☐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1.0
		☐ 자활기업이거나 자활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1.0
		☐ 마을기업이거나 마을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1.0
④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 지원	☐ 장애인기업이거나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5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0.3
⑤ 여성 기업 지원 등	여성 기업 지원 및 고용 촉진	☐ 여성기업이거나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5
		☐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0.4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5
⑥ 근로 여건 개선	근로여건 개선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0.5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0.5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0.5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0.5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5

[물품구매 적격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①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우수	☐ 창업기업	1.5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1.0												
		☐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8개월 이상)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table><tr><th>대기업</th><th>중기업</th><th>소기업 및 소상공인</th></tr><tr><td>7% 이상</td><td>8% 이상</td><td>11% 이상</td></tr><tr><td>6% 이상</td><td>7% 이상</td><td>9% 이상</td></tr><tr><td>5% 이상</td><td>5% 이상</td><td>5% 이상</td></tr></table>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1.5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7% 이상	8% 이상	11% 이상											
6% 이상	7% 이상	9% 이상													
5% 이상	5% 이상	5% 이상													
		1.0													
		0.5													
②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 신설기업(설립 18개월 미만)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1.0												
			0.5												
		☐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1.0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	1.5												
		☐ 사회적협동조합	1.5												
		☐ 자활기업	1.5												
		☐ 마을기업	1.5												
		☐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을 보유한 단체	1.0												
④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 지원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촉진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1.0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	2.0												
		☐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을 보유한 단체	1.0												
⑤ 여성 기업 지원 등	여성 기업 지원 및 고용 촉진	☐ 여성기업	1.0												
		☐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1.0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0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5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0.5												
⑥ 근로 여건 개선	근로여건 개선 노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1.5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0.5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1.5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공사종합심사낙찰제: 건설인력고용에 대해 평가 후 0~1점 부여
- 공사, 용역, 물품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은 수행 능력 취득점수가 심사 분야별 배점 한도에서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 1)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16.3.18. 이후 「K-water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결정 방법에 의한 경우 적용
 - 2) 공사 적격심사
'20.3.18. 이후 「K-water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결정방법에 의한 경우 적용
 - 3) 용역 적격심사
'13.8.1. 이후 「K-water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결정방법에 의한 경우 적용(창업기업의 경우 '14.7.1. 이후 적용, 고용창출의 경우 '17.12.13. 이후 적용, 고용창출의 경우 '18.3.1. 이후 적용)
 - 4) 물품 적격심사
'08.12.10. 이후 「K-water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경우 적용(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12.7.10. 이후 적용, 창업기업의 경우 '16.7.1. 이후 적용, 고용창출의 경우 '18.3.1. 이후 적용)
- 지원기간: 규정 개정 시까지



지원절차

-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공사수행능력(간이형의 경우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에 반영 및 공사, 용역, 물품 적격심사 평가 시 신인도 평점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및 추가 지원방안 마련 검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정규직 채용 기업에 환경시설 시공평가 가점 부여

- 기관명_ 한국환경공단
- 부서명_ 환경시설본부 환경시설처
- 연락처_ 032-590-3338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0호, 2024.4.12.)
- 「환경시설 설치공사 시공평가 지침」(한국환경공단 지침 제457호, 2024.6.4.)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환경시설 설치공사 시공사
- (요건) 환경시설 설치공사 수행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에 따라 시공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1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대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세부평가항목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가점)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처리 (가점없음)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0.5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처리 (가점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환경시설 설치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24.6.4.) 이후 시행되는 시공평가
- (지원기간) 「환경시설 설치공사 시공평가 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



지원절차

① 시공평가 실시	시공평가 시 관련자료 확인 등 통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에 따른 가점(최대1점) 부여
② 시공평가 점수 등록	시공평가 점수의 '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
③ 활용	종합평가 낙찰제(공사비 300억 이상) 등 기술이행 능력평가에 반영

* (활용)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기술이행능력평가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향후 추진계획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에 대한 가점(최대 1점) 지속 부여 및 모니터링

90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부처명_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관명_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부서명_ 재무경영팀
- 연락처_ 054-750-4123



관련규정

- 공단 용역적격심사 세부 기준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 단순노무용역(청소, 시설, 경비 등)외 해당없음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신인도 심사항목 배점 1.5점 가점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18.10.10.
- 지원기간: '18.10.10. ~ 내부규정 개정 시까지



지원절차

- 용역적격심사 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가점(1.5점) 부여



향후 추진계획

- 매년 관련 규정 검토하여 개정 여부 판단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중소벤처기업부
- 부서명_ 판로정책과
- 연락처_ 044-204-7541



관련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지원대상 및 요건

- 신규 채용기업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가산점 3점)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신규 채용기업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가산점 2점)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신인도 배점한도 최대 3점 중 신규 채용기업에게 가산점(3점 ~ 2점) 부여
- * '18.6.1일부터 가점 확대(1.5 → 3.0, 1.0 → 2.0)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인도 배점한도(3점 ~ - 2점)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 지원기간: 상시



지원절차

- 경쟁입찰에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와 함께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신인도 평가 시 신규 채용기업에 신인도 가점 부여



향후 추진계획

- 상기 요건을 충족한 신규 채용기업에 대해 지속 적용

- 기관명_ 기술보증기금
- 부서명_ 기술보증부
- 연락처_ 051-606-7345



관련규정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기술보증기금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①고용증가기업, ②고용창출 인증 또는 세제지원 기업, ③일자리평가 우수기업, ④일자리창출요건표 충족기업 중 1개 이상 충족되는 기업

유 형	내 용
고용증가기업	과거 1년전의 상시근로자와 비교시 10인 이상 고용이 증가 또는 20인 이상 고용한 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기업 적용 제외)
고용창출 또는 세제지원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받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정부의 신규고용 확대와 관련된 장려금(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최근 1년 이내 고용확대로 세제지원 받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은 기업 - 최근 1년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일자리평가 결과가 50점 이상인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충족기업	고용실적, 기술성, 미래성장가능성 등 자체 요건충족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보증료 감면(0.2%p), 신용도유의기업 영업점장 전결 상향(1억원→2억원) 등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선정 후 유효기간 1년 적용



지원절차

- 보증심사 시 “일자리창출기업” 대상 여부 판별하여 선정시 우대 혜택 제공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대 지원할 예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국 세 청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기관명_ 국세청
- 부서명_ 조사기획과
- 연락처_ 044-204-3518



지원대상 및 요건

- 당해년도 상시근로자수(연평균)가 직전년도 대비 2%(최소 1명)이상 증가 되었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 청년(15세 ~ 34세) 및 취업취약계층(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신규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2배 가중치 부여
 -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 유예지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배제



지원수준 및 한도

- 납세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유예 승인 시 세무조사 착수예정일로부터 2년간(지방소재 기업은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지원절차

-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사전에 안내
- 납세자가 고용현황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에 의하여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하여 유예 여부를 통지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 기관명_ 국세청
- 부서명_ 징세과
- 연락처_ 044-204-3028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14조 【납부 고지의 유예】, 제105조 【압류·매각의 유예】 및 동법 시행령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담보제공】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제3항



지원대상 및 요건

- 납세유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납세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
- (지원한도) 유예세액 1억원 한도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유예 신청을 승인할 경우
 - (지원기간) 납세유예 승인기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고지의 유예는 최장 9개월, 압류·매각의 유예는 최장 1년)
-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사업장을 가진 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해 최장 2년 범위 내



지원절차

-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하여 납부기한 내 결과 통지



향후 추진계획

- 납세담보 면제 제도에 대한 개별안내 및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조 달 청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 기관명_ 조달청
- 부서명_ 구매총괄과
- 연락처_ 042-724-7259



관련규정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 4, 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신인도 평가



지원대상 및 요건

- 일자리창출, 청년·여성·장애인고용우수기업, 고용안정우수기업, 정규직 전환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초과 상시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5명 이상 1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1%p
10명 이상 2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설비투자금액의 4%p
4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p

평가요소	등급	평점	비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3.0	
	6%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3.0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3.0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평가요소	등급	평점	비고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평가요소	등급	평점	비고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0	
저출생대응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부처별 정책지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지원수준 및 한도

- 신인도 가점은 계약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서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의 범위 내에서 부여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이 적용되는 경우 신인도 항목의 배점한도는 +5 ~ -5점이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점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 +7점까지 가점 적용
-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물품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 4, 5]의 신인도 항목의 배점한도는 +3 ~ -3점이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배점한도는 +4.25 ~ -5점임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결정방법에 의한 경우 고용인원(률)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 지원기간: 규정 개정 시까지



지원절차

-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점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및 추가 지원방안 마련 검토

사회적 일자리 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

- 기관명_ 조달청
- 부서명_ 구매총괄과
- 연락처_ 042-724-7259



관련규정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4, 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신인도 평가



지원대상 및 요건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평가요소	등급	평점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2.0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을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신인도 가점은 계약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서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의 범위 내에서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17.12.1. 이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결정방법에 의할 경우 적용(자활기업, 마을기업은 '18.4.1. 이후)
- 지원기간: 규정 개정 시 까지



지원절차

-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점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및 추가 지원방안 마련 검토

- 기관명_ 조달청
- 부서명_ 구매총괄과
- 연락처_ 042-724-7259



관련규정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별표 4, 5]



지원대상 및 요건

- 여성, 청년,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기업구분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층 우수기업은 '고령자 친화 기업'에 가점 신설



지원수준 및 한도

-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가점 신설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지원현황】

평가요소	등급	평점	비고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고령층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1.25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지원기간: 규정 개정 시까지



지원절차

-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점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 후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방위사업청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방위사업청
- 부서명_ 방위산업금융지원TF
- 연락처_ 02-2079-6453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고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 공고일 직전 6개월 이내의 기간 평균 고용인원이 그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보다 증가하였다면, 증가인원 1인당 0.02%p를 차감하여 최대 0.1%p까지 금리우대 진행
- * 방산업체인 대·중견기업의 경우 1인당 0.01%p, 최대 0.3%p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최대 0.1%p까지 금리 우대(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 적용)
- * 방산업체인 대·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0.3%p까지 지원



지원기간

- 지원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간 융자사업자에게 우대금리 적용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자금 융자 신청 → 사업 타당성 검토 → 자금 융자 심의 → 융자 대상자 통보 → 대출협의/승인 → 지원사업별 대출 신청 → 대출금 이자 분기별 지급신청 → 이자지급(분기별)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가점 부여

- 기관명_ 방위사업청
- 부서명_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연락처_ 02-2079-6479



관련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지원대상 및 요건

-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 인원이 최근 1년간 평균 3명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구 분	세부 사업명	가점 비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1.0%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1.0%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사업별 지정된 가점 부여
- 단, 다른 가·감점 항목과의 합이 전체 평가 점수의 5%(국방벤처(혁신기술) 지원 사업은 최대 3%)를 넘을 수 없음



지원절차

- 연구개발기관 또는 지원 대상기업(주관기관)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금융위원회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신용보증기금) 고용촉진(안정) 창업보증

- 기관명_ 신용보증기금
- 부서명_ 신용보증부
- 연락처_ 053-430-4358



관련규정

-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 분	고용증가형 기업	고용유지형 기업
고용 촉진형	① 창업 후 1~3년 ② 정규직근로자 수가 최근 1년간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면서, 전년 동월말 대비 2명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① 창업 후 1~3년 ② 과거 1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 동월 말 대비 같거나 증가하였을 것
고용 안정형*	① 창업 후 3~7년 ② 정규직근로자 수가 최근 1년간 평균치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으면서, 전년 동월 말 대비 3명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① 창업 후 3~7년 ② 과거 1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 동월 말 대비 같거나 증가하였을 것

* 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까지 이용 가능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보증비율 우대(고용촉진형: 95% 적용, 고용안정형: 90% 적용)
- 보증료율 우대(고용촉진형 0.3%p 차감, 고용안정형: 0.2%p 차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보증취급일로부터 5년



지원절차

- 보증신청 > 보증상담 > 신용 조사 및 심사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가젤형 기업에 대한 보증

- 기관명_ 신용보증기금
- 부서명_ 신용보증부
- 연락처_ 053-430-4358



관련규정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 분		가젤형기업	
		창업형 예비가젤 기업	가젤 기업
성장 촉진형		①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업 ②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③ 당기 매출액 40억원 이상 ④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⑤ 최근 2개년 연속 매출 20% 이상 증가	①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업 ② 창업 4년 초과 ③ 당기 매출액 50억원 이상 ④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⑤ 최근 3개년 연속 매출 20% 이상 증가
	고용 창출형	①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② 당기 매출액 40억원 이상 ③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① 창업 후 4년 초과 ② 당기 매출액 50억원 이상 ③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④ 최근 3개년 연속 상시근로자 수 20% 이상 증가 ⑤ 최근 3개년 연속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
	그 외	①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② 당기 매출액 40억원 이상 ③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④ 최근 2개년 연속 상시근로자 수가 20% 이상 증가	○ 정부 또는 협약 체결기관에서 선정한 가젤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보증료율 우대(예비 가젤기업: 0.3%p 차감, 가젤 기업: 0.4%p 차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보증취급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절차

- 보증신청 > 보증상담 > 신용 조사 및 심사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관련규정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업

- ① 창업 후 3년 초과
- ② 매출 100억원 이상(도소매업 150억원, 서비스업 70억원 이상)
- ③ 상시종업원 30명 이상(단,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제외한다.)
- ④ (외감기업의 경우) 당기 감사의견 '적정'
- ⑤ 당기순이익 시현
- ⑥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이내인 기업
- ⑦ 당기말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큰 기업
(다만, 개인기업은 자기자본 전액 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으로 한다.)
- ⑧ 미래성장성등급 K7 이상



지원수준 및 한도

- 보증비율 우대(90% 적용)
- 보증료율 우대(좋은 일자리 기업: 0.4%p 차감, 최고 일자리 기업: 0.5%p 차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보증취급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절차

- 보증신청 > 보증상담 > 신용 조사 및 심사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고용창출기업 특례보증

- 기관명_ 신용보증기금
- 부서명_ 신용보증부
- 연락처_ 053-430-4358



관련규정

- 고용창출 특례보증 프로그램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중 정규직 근로자·1년 미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이미 고용했거나, 향후 6개월 이내에 고용할 예정인 기업

- ① 혁신형 중소기업
- ② 가젤형 기업 또는 고용의 질 우수기업
- ③ '신보 잡클라우드'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예정)기업
- ④ '워크넷'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예정)기업
- ⑤ 유망서비스 부문 영위 기업, 특화서비스 부문 기업 및 BEST 서비스기업
- ⑥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고정보증료율 0.7% 적용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보증취급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절차

- 보증신청 > 보증상담 > 신용 조사 및 심사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 기관명_ 신용보증기금
- 부서명_ 신용보증부
- 연락처_ 053-430-4358



관련규정

- 고용창출 특례보증 프로그램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정규직 근로자·1년 미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로 청년인력을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미 고용했거나, 향후 6개월 이내에 고용할 예정인 기업 중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혁신형 중소기업
- ② '가젤형 기업' 및 '고용의 질 우수기업'
- ③ 제조업 영위기업
- ④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⑤ 유망서비스 영위기업, 특화서비스 부문 영위기업
- ⑥ '신보 잡클라우드'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예정)기업
- ⑦ 유망창업기업
- ⑧ '워크넷'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예정)기업
- ⑨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기업
- ⑩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고정보증료율 0.7% 적용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보증취급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절차

- 보증신청 > 보증상담 > 신용 조사 및 심사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경남은행) 여신지원 시 금리 최대 0.5% 및 외화 수수료 우대

- 기관명_ 경남은행
- 부서명_ 기업고객부
- 연락처_ 055-290-8626



관련규정

- 대외기관 협약대출(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금융지원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선정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5명이상 업체
-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가족친화 인증서 보유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 지원시 최대 0.9% 이내 금리우대, 외환매매수수료 50% 이상 수입신용장개설 수수료 20% 우대, 수출환어음 매입환가료율 0.5% 우대 등
- 지원한도: 별도 제한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별도 제한 없음



지원절차

- 통상의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 지속 운용 예정

(경남은행) 여신지원 시 금리 최대 1.0% 우대

- 기관명_ 경남은행
- 부서명_ 여신고객부
- 연락처_ 055-290-8626



관련규정

- 클러스터 기업 대출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핵심전략산업 및 클러스터 기업
- 혁신산업(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지원 시 최대 1.0% 이내 금리우대
- 지원한도: 별도 제한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별도 제한 없음



지원절차

- 통상의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 지속 운용 예정

- 기관명_ 부산은행
- 부서명_ 기업고객부
- 연락처_ 051-620-3423



관련규정

- 여신금리 및 수수료 업무매뉴얼



지원대상 및 요건

-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제조업체로 신규 고용창출 후 3개월 경과 기업으로 내규상 여신 취급이 제한되지 않는 중소기업
- 대출 지원 시점에 전년 대비 정규직원이 증가한 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 신규지원 시(기 취급 대출 회수 조건부 대출, 정책자금대출, 협약성 대출 등은 제외)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감면금리를 산출금리에서 감면(최대 1.50% 이내)
- 지원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여신 승인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지원절차

- 일반적인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하며, 신규고용 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금리우대 지원 중

(우리은행) 4대 사회보험 도입 사업장 및 고용 우수기업 여신금리 최대 0.2% 우대

- 기관명_ 우리은행
- 부서명_ 기업금융솔루션부
- 연락처_ 02-2002-1989



관련규정

- 「우리CUBE론-X」,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 「ESG혁신기업대출」 여신업무 기준 內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및 “고용 우수기업” 기준(우리은행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4대 사회보험을 도입*한 중견 및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신규등록 시 0.1% 우대 (단, 여신취급일 전월말 기준 해당 보험 자동이체 등록실적 미보유자 限)
- 우수 일자리창출* 중견 및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 상시근로자 수 기준: 10인 이상 0.1% 우대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지원 시 각 0.1% 금리우대(최대 0.2% 가능)
- 지원한도: 제한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해당 여신 취급일로부터
- 지원기간: 해당 여신 만기일까지



지원절차

- 통상의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하며, 취급 전 상시근로자 수 확인 要
- ※ 기타: 수신 및 외환 수수료 우대 가능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 지속 운용

- 기관명_ 전북은행
- 부서명_ 여신추진부
- 연락처_ 063-250-7256



관련규정

- 대출상품 취급기준(기업고객) 中 JB 기술형창업기업대출



지원대상 및 요건

- 창업기업·소재부품장비기업·일자리창출기업의 운전자금은 만기 1년 이내 신규 원화자금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 일자리창출기업의 범위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1)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	---

주: 1)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는 제외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한국은행 배정비율에 따라 감면금리수준이 결정

산식	$(\text{대출기준금리} - \text{차입금리}) \times \text{배정비율} = \text{감면금리}$
----	--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한실적의 75% 해당액을 대출계좌별로 배정한다.
(단, 시설자금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취급실적의 25%를 대출계좌별로 배정한다.)

- 한도: 별도 제한 없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해당여신 취급일로부터
- 지원기간:
 - 1) 운전자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거치기간 운용은 할 수 없다.
 - 2) 시설자금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한연장은 할 수 없다.



지원절차

- 여신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 지속 운용 예정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취약·배려층 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 기관명_ 신용보증기금
- 부서명_ 신용보증부
- 연락처_ 053-430-4358



관련규정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 내규)



지원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① 최근 1년 이내 정부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기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 ②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사회적기업' 중 유형이 일자리제공형인 기업
- ③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⑤ 사회적 배려층 인력을 정규직 근로자·1년 미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로 최근 6개월 이내 고용한 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가젤형 기업', '고용의 질 우수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보증비율 우대(90% 적용)
- 보증료율 우대(0.2%p 차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보증취급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보증신청 > 보증상담 > 신용 조사 및 심사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부산은행)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특례보증부 대출 지원

- 기관명_ 부산은행
- 부서명_ 기업고객부
- 연락처_ 051-620-3466



관련규정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특례보증부 대출 업무매뉴얼



지원대상 및 요건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서, 아래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거래중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기업
 - ①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② 사회적 협동조합
 - ③ 행정안전부 지정한 마을기업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① 일시상환: 신규취급액 COFIX금리 + 1.16%
 - ② 분할상환: 신규취급액 COFIX금리 + 1.51%
- 지원한도: 동일 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既 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 포함 4억원 이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



지원절차

- 일반적인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의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향후 추진계획

- 2018.2.22.부터 시행 중

(국민은행) 일자리창출 기업 대상 여신지원 시 1.3%p 이내 금리우대

- 기관명_ KB국민은행
- 부서명_ 기업상품부
- 연락처_ 02-2073-3907



관련규정

-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 관련 당행 내부문서



지원대상 및 요건

- 다음 1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BB(소매형 SOHO 6등급C) 이상 중소기업 신규여신
 - ① KB굿잡 (공동)주최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 ②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선도기업 또는 도제기업
- ☞ 확인서(직업계고 발급) 징구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 지원시 0.5%p ~ 1.3%p 금리우대
 - KB굿잡 기본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KB굿잡 취업 박람회 참여(0.5%p),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0.5%p) 또는 도제기업(0.8%p) 또는 청년일자리강소기업(0.8%p)
 - 일자리 창출 우대금리(0.5%p): 청년 창업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수 증가 기업
- 지원한도: 15,000억원(한도 소진 시까지)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해당 여신 취급일로부터
- 지원기간: 해당 여신 만기 시까지(기한 연장 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유지 등 요건 충족 필요)



지원절차

- 일반적인 여신 신규절차에 의하여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지원한도 증액 검토하여 지속적인 금리우대 지원 예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서울특별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서울특별시
- 부서명_ 일자리정책과
- 연락처_ 02-2133-5444



관련규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 및 제 19조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서울시 소재(본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우수성, 일자리 질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1인 최대 15백만원, 기업당 3명)
- 신입직원 온보딩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지원, 일·생활균형 컨설팅 제공
- 대출금리 우대(신한은행 연계), 방송광고비 할인(KOBACO 연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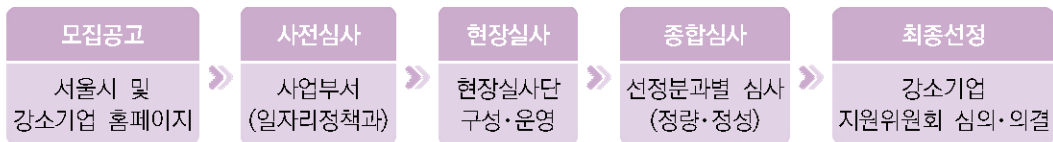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매년 서울형 강소기업 공모·선정 후, 신규 청년 채용 시 지원 개시
- 협약기간(2년) 만료 후, 재인증 평가 통해 지원기간 연장
- ※ 예산지원 기간 최장 6년



지원절차

- 사전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후 강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향후 추진계획

- 기업 경쟁력을 고루 갖춘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지속 추진



관련규정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별보증 취급기준(재단 내규)



지원대상

- 공통: 사업자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분	대상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기업, 고정장(가젤형) 기업,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여성고용기업, "Hi-Seoul 기업" 지정 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기업, 서울시 에스프로 및 경력관리시스템 발주계약 체결기업
고용안정 우수기업	고용구조 우수기업, 생활임금 적용기업, 사회보험 직장가입 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업,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업, 가족친화기업
사회적 배려대상 고용기업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한부모가정,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구 분	일자리 창출기업
보증 한도	한도평가금액의 130%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현재 운용 중으로, 별도 통보 시까지 운용 예정



지원절차

- 재단 영업점(방문, 비대면)에 신청, 지원대상의 적격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 후 지원 결정



향후 추진계획

- 2009.2.13. 최초 시행. 향후 지속적인 우대지원 예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부산광역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관련규정

-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본사와 주사업장(공장)이 부산에 소재한 3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업체로서
 - 최근 3년간 고용 창출실적 합계가 증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심사를 통하여 선정
- * 증가 기준: 10인 이상 - 100인 미만업체 10인 이상,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15명 이상, 300인 이상 20명 이상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인증서 수여 및 근로환경개선비 지원(최대 40백만원, 인증 당해 연도만 지원)
-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인증일로부터 고용인원 1년 이상 유지 시)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 대상 추천(별도 심의 후 선정)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 대상(별도 신청 및 심사)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가산점 부여
- 신용보증수수료 0.5% 차감(부산신용보증재단)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6. 6월(인증서 수여일부터)~
- 지원기간: 2026. 6월 ~ 2029. 6월(인증서 수여일부터 3년간)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안내(2월) → 신청·접수(2~3월) → 서류·현장평가(3~4월) → 심사위원회 심의·선정·인증서 교부(5~6월) → 지원사업 시행 → 평가(12월)



향후 추진계획

-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접수 및 평가('26. 2~4월)
- 최종 선정(심사위원회) 및 인증서 수여('26. 5~6월)



관련규정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 최종선정심의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고용우수기업
- 요건: 인증일로부터 고용인원 1년 이상 유지 시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세무관련 지원
 - * (세제)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2026.12.31.까지 감면)
 - * 지원조건: 해당 사업 직접 사용, 임대용 부동산 제외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고용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간



지원절차

- 인증기업 별도신청 →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 담당부서 심사



향후 추진계획

- 인증 업체별 신청에 따라 심사 선정

- 기관명_ 부산광역시
- 부서명_ 세정운영담당관
- 연락처_ 051-888-2161



관련규정

-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 요건: 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심사 필요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세무관련 지원
(규제 완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다만, 해당 기업에 대한 탈세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 등 필요시 제외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지원절차

- 인증기업 별도 신청 →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 담당부서 심사



향후 추진계획

- 인증 업체별 신청에 따라 심사 선정



관련규정

- 「민·관·공 협업 부산지역기업 지속성장 및 고용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지원대상 및 요건

- 캠프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이용 기업 중 지원요건*을 충족한 고용우수기업
- * 본사 및 사업장(인수자산)이 부산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기업 당 1천만원(최초 1회에 한함), 연 2개 기업 이내(연간 총 2천만원 한도)
- * 연간 한도 소진으로 당해연도 지원불가 기업은 차년도 우선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4.12.16. ~
- 지원기간: 「민·관·공 협업 부산지역기업 지속성장 및 고용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절차

- (부산시) 사업공고 및 안내(2월)→ 신청 접수(2~3월)→ 고용우수기업 선정(5~6월)
- (캠프) 선정된 기업이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제출 시 임대료 감면



향후 추진계획

- 인증서 제출 기업에 대한 지원 실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인천광역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119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기관명_ 인천광역시
- 부서명_ 경제정책과
- 연락처_ 032-440-4234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대상 및 요건

-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인천소재 기업으로서,
 - *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고
 - *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
- 대상업종: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 *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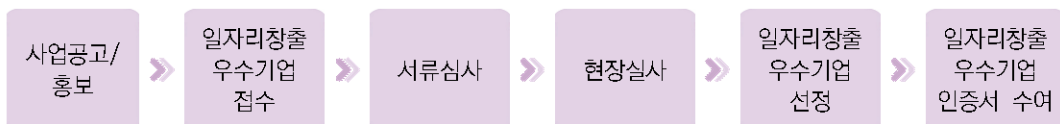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2년간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2026. 7월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 기관명_ 인천광역시
- 부서명_ 청년정책담당관
- 연락처_ 032-440-4179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9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인천 거주 청년 2인 이상 채용 실적이 있는 인천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 (중소기업) 2인 이상 채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견기업) 9인 이상 채용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근로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지원항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 등
 - 시설개보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등
 - 물품구입: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안마기기, 냉장고, 세탁기, 옷장 등
- 지원금액: 기업별 6~24백만원 이내(청년 신규채용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채용인원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지원금액	6백만원 이내	9백만원 이내	12백만원 이내	15백만원 이내	18백만원 이내	21백만원 이내	24백만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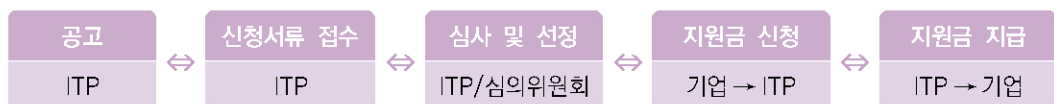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매년 모집 공고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6년 접수기간: 2026. 3. 10.(화) ~ 4. 7.(화)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지속 시행(예정)

- 기관명_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부서명_ 시 소상공인정책과/
재단 보증사업부
- 연락처_ 032-440-1742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용 관련 제반 규정



지원대상 및 요건

- (최근 1년 이내)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 소기업·소상공인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소기업·소상공인)
- (인천시) 일자리 좋은 뿌리기업(소기업·소상공인)
-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 기업(소기업·소상공인)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 지원)
- 인천시 이차보전 연 1.5~2% 지원(3년간)
- *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유지 1명 이상(1.5%) / 3명 이상, 우수·뿌리기업 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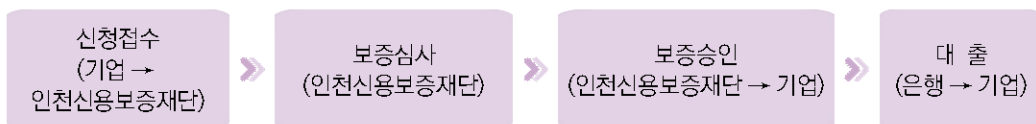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6. 2. 용자 신청접수
- 지원기간: 2026. 2. ~ 한도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125억원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지속 시행

- 기관명_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부서명_ 시 소상공인정책과,
재단 보증사업부
- 연락처_ 032-440-1742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용 관련 제반 규정



지원대상 및 요건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 지원)
- 인천시 이차보전 연 1.5% 지원(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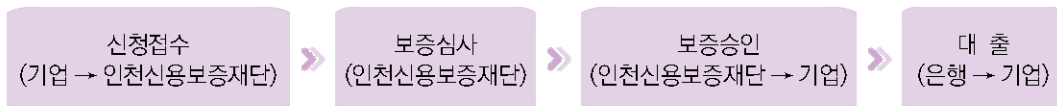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6. 2. 용자 신청접수
- 지원기간: 2026. 2. ~ 한도 소진 시까지
- ※ 지원규모: 125억원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지속 시행

우수기업(유망중소·비전·중견성장 사다리기업) 선정 시 우대

- 기관명_ 인천광역시
- 부서명_ 산업창업정책과
- 연락처_ 032-440-4257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우수기업(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지원요건: 관내 중소·벤처기업 중 공장등록 등을 마친 중소 제조기업

구 분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 사다리기업
①매출액 전형 (최근년도 매출)	제조업	20억 이상 ~ 80억 이하	80억 초과 ~ 400억 미만	400억 이상
	제조업외	10억 이상 ~ 40억 이하	40억 초과 ~ 200억 미만	200억 이상
②벤처 전형 (벤처인증 기업 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9% 이상	7% 이상	5% 이상
공통사항	종업원	5인 이상	10인 이상	20인 이상
	업 력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신용등급	평가등급 점수반영	평가등급 점수반영	평가등급 점수반영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 기본금리 + 1% 우대(한도 20~55억 내)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우수기업 선정일부터
- 지원기간: 인증일로부터 5년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 2026. 4. ~ 5.: 우수기업 선정 공고 및 접수
- 2026. 6. ~ 10.: 평가

- 기관명_ 인천광역시
- 부서명_ 산업창업정책과
- 연락처_ 032-440-4264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우대 배점 1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지원기업 선정 시
- 지원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인증 유효기간)



지원절차

- 사업 신청 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제출



향후 추진계획

- 지속 시행

- 기관명_ 인천광역시
- 부서명_ 세정담당관
- 연락처_ 032-440-2552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



지원대상 및 요건

-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써
 1.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3.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단, 취득가액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 유예대상 제외
 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4.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 지원기간: 세무조사 3년간 유예



향후계획

- 관련부서 등에 해당 법인 확인 후 유예 법인 선정

- 기관명_ 인천광역시
- 부서명_ 세정담당관
- 연락처_ 032-440-2546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6조



지원대상 및 요건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상담방법

- 전화·팩스(1차), 원하는 납세자 대면 상담(2차)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행정복지센터, 행사장 등)시 현장 상담



마을세무사 찾기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상담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 제공



향후계획

- 매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내실화

제물포구 구민 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 기관명_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부서명_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_ 032-770-7874



관련규정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 제물포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신규 고용한 제물포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기본요건
 - *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 기업
 - * 기존 보조사업자가 계속해서 신규 근로자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 필수
 -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 시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휴·재학생, 병역특례자 고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근로자의 월급(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기업
 - * 국가, 인천광역시 등 타기관의 고용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70만원 지원

구 분	금액(만원)	비 고
기본지원금	60	■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월급: 2,156,880원(209시간 기준) ■ 2026년 市 생활임금 - 시급: 12,010원 - 월급: 2,510,090원(209시간 기준) ■ 지원 기준인원(상시근로자) - 10인 이하 기업: 2명 - 10인 초과 기업: 3명
청년·장애인 고용	70	
인천시 생활임금 이상 기본급 지급		
지원기준인원 초과	40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6년 1월
- 지원기간: 신규 고용 3개월 경과 후 최대 1년간(예산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 참여신청 → 적격심사 → 약정체결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향후 추진계획

- 업체별 신청에 따라 심사 선정 및 계속사업 추진

강화군 이전 또는 신설기업 보조금 지원

- 기관명_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부서명_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_ 032-930-3358



관련규정

- 「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지원대상

- 2015년 1월 1일 이후 공장을 강화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
- * 이전기업: 이전 시점 기준 강화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강화군으로 이전한 기업



지원요건 및 내용

지원금	지원요건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군민 10인 초과 신규 채용	• 6개월간 매월 30만원/초과인원 • 기업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군민 10인 초과 신규 채용 후 교육훈련 실시	• 6개월간 매월 30만원/초과인원 • 기업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본사이전보조금	매출액 400억원 이상 기업 이전 및 평상시 고용인원 20인 초과	•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 • 기업별 3억원 범위 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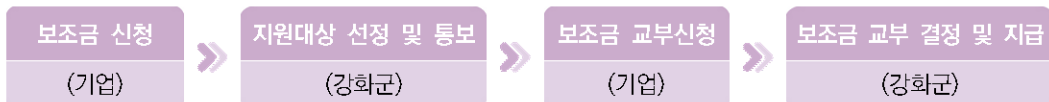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지원기업 선정 시
- 지원기간: 매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계속사업 추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대구광역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대구광역시
- 부서명_ 국제통상과
- 연락처_ 053-803-3293



관련규정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대상

- 대구시 선정 우수기업
- * Pre-스타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휴스타(Hustar) 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3030기업 등 우대



지원내용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세부 사업* 지원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3~5점)
- *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등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세부 사업 공고시
- 지원기간: 인증기간 또는 수상일로부터 3년내 지원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및 선정(가점) → 지원
- * 대구광역시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회원가입 후 접수)

- 기관명_ 대구광역시
- 부서명_ 고용노동정책과
- 연락처_ 053-803-3702



관련규정

-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대구광역시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그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 고용친화기업 선정지표

1. 필수요건: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2년 이상 정상가동, 대졸신입연봉 3,100만원 이상, 복지제도 10종 이상 등
2. 정량지표: 정규직 고용 증가량(율), 고용유지율, 직원복지제도, 월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청년채용 비율, 평균 연장근로시간, 고용관련 표창 등

※ 2024년 말 기준 고용친화대표기업 60개 기업 선정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직접지원: 기업별 맞춤형지원으로 근무환경 개선, 임직원 복지향상, 노사화합분야 기업당 최대 17백만원 이내 지원
- 간접지원 및 연계지원: 기업브랜드광고 및 네트워킹지원(고용친화 기업의 날 행사 등), 인력 및 자금지원 우대, 지방세세무조사 유예 등



적용시점

- 고용친화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의거 고용친화기업 선정이후(인증기간 3년)



지원절차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일정(시기) 변동 가능

131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기관명_ 대구광역시
- 부서명_ 세정담당관
- 연락처_ 053-803-2524



관련규정

- 대구광역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지원대상 및 요건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인증절차: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세무관련 지원
- 지원한도: (규제완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다만, 해당 기업에 대한 탈세정보가 나타나는 경우 등 필요시 제외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우수기업 선정일부터
- 지원기간: 3년간



지원절차

- 인증기업체 → 세무조사 담당부서(시·구·군) 신청·심사



향후 추진계획

- 인증 업체별 신청에 따라 심사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사업 우대지원

- 기관명_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부서명_ 일자리경제실
- 연락처_ 062-531-6332



지원대상 및 요건

-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자금우대지원(업체당 5억원 이내)
-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자금우대지원(지원한도 10% 이내)
-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시 단체관을 구성하여 업체 참가비 일부 지원
-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국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시 참가비 일부 지원
- 중소기업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해외 물류비 지원
- 해외규격인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543종 인증 획득 비용 일부 지원(50~70%)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지원기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기간 내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추진

- 기관명_ 광주경제진흥은행일자리재단
- 부서명_ 일자리경제실
- 연락처_ 062-956-2639



지원대상 및 요건

- 관내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
 - ①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②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 ③ 기타 수출관련 사업 참여 업체
- * 광주시장이 선정한 명품기업 및 PRE-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 기업은 융자액의 10%이내 추가 지원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한도: 업체별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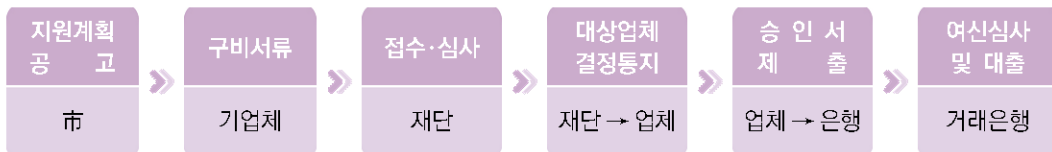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지정 유효 기간 내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우수기업 지속 지원

- 기관명_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서명_ 세정과
- 연락처_ 062-613-2531



관련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0조



지원대상 및 요건

-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써
 - *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 ※ 유예대상 제외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1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유예기간 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인증일(최초)
- 지원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관련 조례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해당부서) → 세정과에 통보 → 매년 초(2~3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반영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지속 추진

- 기관명_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서명_ 세정과
- 연락처_ 062-613-2522



관련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 제7조(일자리우수기업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구)광주「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일자리우수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지원요건: (구)광주「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 촉진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일자리우수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취득세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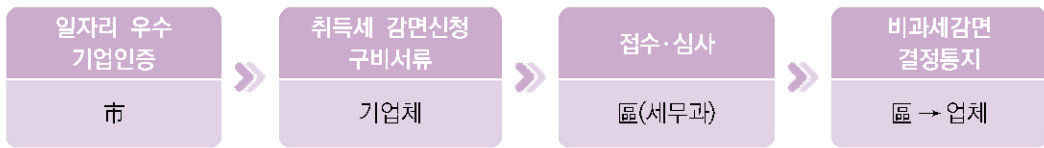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원기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지원절차



※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일자리우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계획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등

- 기관명_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서명_ 창업진흥과
- 연락처_ 062-613-3864



관련규정

-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
 - ※ 광주광역시장이 선정하는 우대기업(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포함
- 지원요건: 손익계산서상 해당 업종에서의 전업률 30% 이상 충족 등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규모: 2,700억원(12개 은행 협약자금)
- 지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우대기업: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 상환기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 ※ 대출금리: 은행별 금리
- 이차보전: 2%p ~ 4%p(우대기업: 3%p ~ 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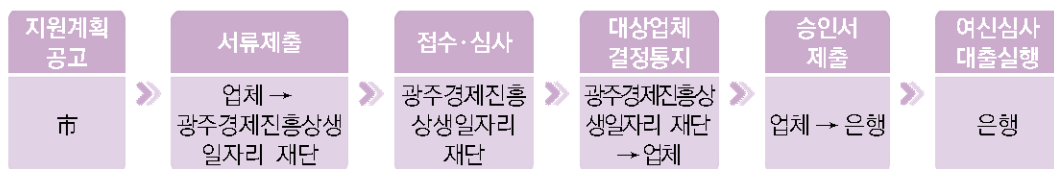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매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고용 창출 기여로 '일자리 우수기업' 으로 인증된 기업 대상의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및 이차보전을 확대 지원

- 기관명_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서명_ 창업진흥과(무역보험공사)
- 연락처_ 062-613-3872



지원대상 및 요건

-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수출업체(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 * 광주광역시장이 선정한 명품 및 PRE-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은 한도액의 10% 추가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 대상보험: 3종(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 * 단체보험 포함
-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100%), 환변동보험(100%), 수출신용보증(90%)
- 지원한도: 제조업 300만원, 무역업 200만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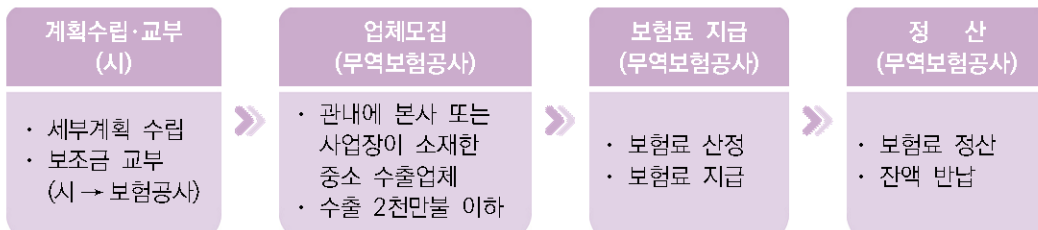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지정 유효기간 내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우수 선정기업 지속 추가(10%) 지원

일자리 우수기업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 기관명_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서명_ 교육지원정책과
- 연락처_ 062-613-1382



지원대상 및 요건

- 일자리 우수기업 종사자 자녀 중 ○명(노동일자리정책관 추천)
- ※ 추천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광주광역시 지역 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대학생 2,000천원, 고등학생 800천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연 1회(하반기 빛고을장학생 선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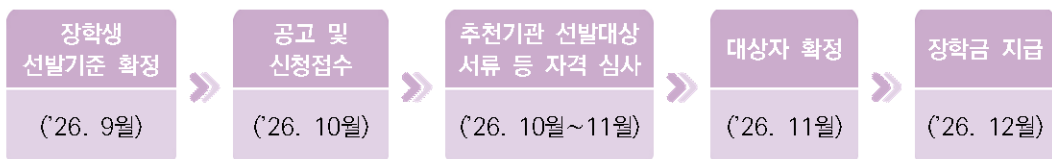


지원절차

- 해당 부서 추천받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



추진절차



- 기관명_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서명_ 중소벤처기업과
- 연락처_ 061-286-3752



관련규정

-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지원대상 및 요건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기업
 - ▶ 3년평균 매출액 20억원 이상, 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
 - ▶ 재무상태,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 ▶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道 경영안정자금(융자) 업체당 지원 한도 상향: 3억 원 → 5억 원
- 道 경영안정자금(융자) 이자 지원 우대: 2% → 2.5%
- 생산제품 유망 중소기업 상징 마크 사용권 부여 등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유망 중소기업 지정 시
- 지원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절차

- 시장군수 추천 → 경영성과 등 기업 종합평가(도) → 유망중소기업 지정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혜택 지속 발굴

- 기관명_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서명_ 중소벤처기업과
- 연락처_ 061-286-3753



관련규정

-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 시행규칙」



지원대상 및 요건

-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제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
- 일자리창출 기업 대상 기준: '23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1개월에 3명 이상 순증되고, 순증 인원이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자금 추천 신청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2.5%(일반 2%)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5년 ~
- 지원기간: 자금 공고일 이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에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융자추천서로 거래 은행에 융자신청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상담 및 추천(연중)

통상진흥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 기관명_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서명_ 국제협력관
- 연락처_ 061-286-2441



관련규정

- 전라남도 수출지원 사업 시행계획



지원대상 및 요건

- 전라남도에 소재한 수출관련 기업
-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 수출업체 통번역비 지원 등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수출지원시책 참가기업 선정 평가 시 1% 이내 가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지원절차

- 참여기업 접수 → 선정위원회 개최 → 기업 선정 → 사업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 수출지원시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

- 기관명_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서명_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_ 061-286-5035



관련규정

-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도내 소재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타 시도 이전기업의 경우, 1년)하고 일자리 증가(5% 이상) 및 근로자 증가(3~5명 이상)에 기여한 기업
- ※ 일자리 창출(40), 고용안정(40), 기업경영(20) 분야 등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직접 지원)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기업당 14백만원),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간접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한도 및 이자 우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5. 6. 30.(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25. 6. 30. 근로자 수 - '24. 7. 1. 근로자 수)
- 지원기간: '26년도



지원절차

- 사업 신청(~7.9.) → 1차 시군 평가 및 추천 → 2차 도 평가 및 현장조사 → 인증 및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시군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도 평가(현장조사 포함) : ~'25. 8.
- 우수기업 인증 통보 : ~'25. 8.
- 우수기업 소재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 : ~'25. 9.
- 시군 본예산 편성·지원 : ~'26. 상반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대전광역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대전광역시
- 부서명_ 기업지원정책과
- 연락처_ 042-270-2662



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 및 동시행규칙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등)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좋은일터 인증기업 등 우대지원기업으로 분류
 - 경영안정자금: 융자액 3억원, 이차보전 2.5% 지원(일반기업 1.5%)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융자액 18억원, 이차보전 3%지원(일반기업 2%)
- * 둔곡·신동·서구평촌 산단 융자한도액: 30억원(시설 25, 운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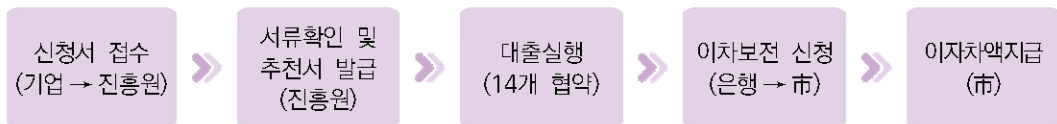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우수기업 선정일 당월부터
- 지원기간
 - 경영안정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8년, 3년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급(우대지원 시행)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울산광역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울산광역시
- 부서명_ 경제정책관
- 연락처_ 052-229-2734



관련규정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본사와 사업장이 울산시 소재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적인 영업 상태이며, 종사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MICE 관련업 등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인증패 및 현판 교부
- 근무환경개선자금 지원(기업당 2,000만원) 등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금리 우대(강소기업 0.5%가산)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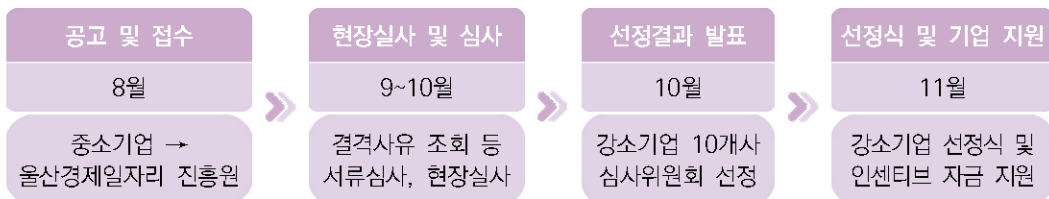


지원기간

-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등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 선정을 통해 결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세종특별자치시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명_ 기업지원과
- 연락처_ 044-300-4823, 4824



관련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세종시 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기업당 180만원 한도)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	홍보 브로셔 및 영상 제작비 지원 (기업당 브로셔 100만원, 영상 400만원 한도)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해외 개최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비용 지원 (개별 전시박람회 따라 상이)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 개최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비용 지원 (기업당 500만원 한도 지원)
수출이음사업	'24년~'25년 세종시 해외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실계약 체결을 위한 후속지원(통·번역, 규격인증 등) (기업당 3백만원 한도 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참가기업 대상 선정평가시 가점(1점) 부여



지원절차

- 국내·해외 판로 지원사업 참가 신청(기업 → 사업수행기관) → 참가업체 선정심사 → 사업비 지원



향후 추진계획

- 국내·해외 판로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인증기업 확인 후 가점 부여

- 기관명_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명_ 기업지원과
- 연락처_ 044-300-4843



관련규정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역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단체(기업·기관)
 - ※ 세종시 내 3년 이상 소재한 기관·기업 중 고용증가량이 많고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에 노력을 많이 하며, 일자리창출 관련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 우선 등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세종시 고용시장 성장에 다방면으로 기여한 기업·기관에 일자리 창출 유공 표창장 수여



지원절차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유공 포상 추천 → 접수



향후 추진계획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일자리 분야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실시

- 기관명_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명_ 기업지원과
- 연락처_ 044-300-4843



관련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3조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필수요건) 세종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스 등) 소재지를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선택요건) 선택요건은 1개 요건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가. 전체 상시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 나. 2026년도 청년근로자 기 채용 이력 및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세종시 관내 기업 중 청년친화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청년친화환경조성을 위한 작은 카페(커피머신 등) 패키지 지원(1개사 당 월 20만원 한도 내 지원)

연번	구분	지원내용
1	커피머신	Gaggia 아니마 OCS(커피전자동머신) + 커피원두
2	제빙기	사무실용 제빙기
3	카페집기	집기트레이(슈가시럽1L, 머그컵 및 리유저블 텀블러 등)
4	기타	패브릭 포스터 및 컬러 엽서, 응원보드 등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6. 3.~
- 지원기간: 상시



지원절차

- 선발공고('26.2.) → 기업선정(15개사) → 지원(상시)



향후 추진계획

- 청년친화환경조성 선정기업 상시 지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경 기 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경기도
- 부서명_ 일자리경제정책과
- 연락처_ 031-8008-8107



관련규정

- 경기도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고용환경개선사업비의 자부담이 20% 이상이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근로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선 등 부대시설 투자비 지원
- 지원한도: 1기업당 40,000천원 이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시 지원



지원절차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기관명_ 경기도
- 부서명_ 일자리경제정책과
- 연락처_ 031-8008-8107



관련규정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인증서 및 현판(기업당 약 23만원 상당의 인증서, 현판 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내
(최초 인증 시부터 2년, 1회 연장 시 최대 4년)



지원절차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기업 홍보물에 사용권 부여

- 기관명_ 경기도
- 부서명_ 일자리경제정책과
- 연락처_ 031-8008-8107



관련규정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인증서 및 현판 등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재사용 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내
(최초 인증 시부터 2년, 1회 연장 시 최대 4년)



지원절차

도 및 일자리재단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승인



사업주

-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등 홍보물 재사용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경기도
- 부서명_ 국제통상과
- 연락처_ 031-8008-2183



관련규정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 평가표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수출 중소기업
- (요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제출 시 가점 2점 또는 3점 부여(100점 만점)
- * 수출기업 교류협력,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FTA통상지원, 경기 수출 기회 바꾸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마케팅 지원,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국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G-FAIR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지원절차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에 기업이 인증서 사본 등록 → 시스템에서 확인 → 가점 부여
- * 대상기업이 수출지원시스템에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주의)



향후 추진계획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가점 적용

기업환경 개선사업(노동, 작업, 소방)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경기도
- 부서명_ 기업육성과
- 연락처_ 031-8030-3034



관련규정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조업)
 - * 일자리 우수기업 가점(3점) 부여
- ▶ 노동환경: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
- ▶ 작업환경: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소기업
- ▶ 소방시설: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지원한도(도비)	지 원 내 용
노동환경	2천만원 이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화상회의실 구축 등 * 기숙사 신축의 경우, 도비 지원한도 50백만원 이내
작업환경	1천만원 이내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개보수,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LED조명 등
소방시설	3천만원 이내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 재원비율: 도비40%, 시군비40%, 자부담20%

- 신청방법: 시군 기업지원 부서 접수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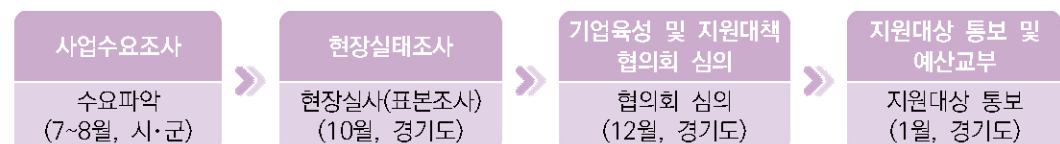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연도별 신청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 지원기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내



지원절차



- 기관명_ 경기도
- 부서명_ 법인조사1팀
- 연락처_ 031-8008-2323



관련규정

-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우수 중소기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으로 세무조사 선정일 현재(매년 2~3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 ※ 세무조사 유예대상 제외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내용

-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 ※ 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적용

- 기관명_ 경기도
- 부서명_ 세정과
- 연락처_ 031-8008-4153



관련규정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대상 및 요건

- 매년 1.1. 현재 지방세 체납이 사실이 없으며, 최근 7년 이상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한 법인



지원수준 및 한도

- 경기도 협약 의료기관(27개)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대표자 한정)
- 도금고[NH농협은행, 국민은행(경기도 내 지점)]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제외
-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유공납세자별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한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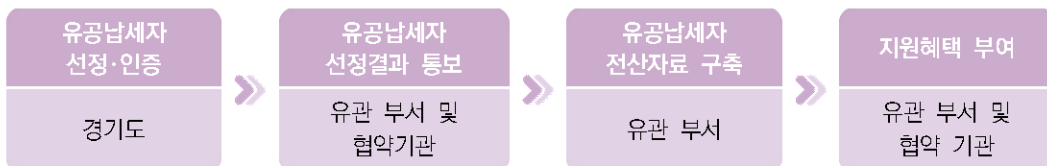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유공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절차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 기관명_ 경기도주식회사
- 부서명_ 유통사업실
- 연락처_ 031-5171-5325
031-5171-5326



관련규정

-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기준 평가표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 경기도 소재 업력 만3년 이상 여성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인정
- (요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가산점 2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 (지원기간) 2026년 4월 ~ 12월



지원절차

- 지원사업 전용 온라인접수 사이트에 기업이 인증서 사본 등록 → 시스템에서 확인 → 가점 부여
※ 대상기업이 온라인 신청 접수시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향후 추진계획

- 지원사업 공고 시 적용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관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부서명: 동부거점센터
- 연락처: 031-830-8566
 - 서부거점센터 070-7116-4816
 - 남부거점센터 031-672-3588
 - 북부거점센터 031-850-7123
 - 북부균형성장지원 TF 031-928-5615



관련규정

- 사업추진: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가점적용: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참여기업 선정 평가표



지원대상 및 요건

- 사업비 출연 27개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 * (미 참여 시·군) 4개시(성남, 안산, 안양, 용인)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내용
 - ▶ 창안개발: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 제품생산: 시제품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 판로개척: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 국내 홍보·판로 등
- 지원한도: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매칭(도비 및 시·군비) 지원
- 재원비율: 지원금 60%(시도비 6:4 비율), 자부담 40%
-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2점)
- 지원기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신청기업 가점 부여

- 기관명_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부서명_ ESG지원팀
- 연락처_ 031-259-6285



관련규정

-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기준 평가표



지원대상 및 요건

- 도내 중소 제조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가산점 1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지원절차

- 유망중소기업 인증 전용 온라인접수 사이트에 기업이 인증서 사본 제출 → 확인 → 가점 부여



향후 추진계획

-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 공고 시 적용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부서명_ 동부권역센터
- 연락처_ 031-830-8567



관련규정

-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 평가표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 참여시군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참여시군(25개):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양평, 여주,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안양, 수원,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연천
- (요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가산점 2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 (지원기간) 2026년 1월~12월



지원절차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전용 온라인접수 사이트에 기업이 인증서 사본 등록 → 시스템에서 확인
→ 가점 부여
※ 대상기업이 온라인 신청 접수 시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향후 추진계획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공고 시 적용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신청기업 가점 부여

- 기관명_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부서명_ 투자유치팀
- 연락처_ 031-259-7012



관련규정

-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선정 평가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기업
- (요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내용) 국내복귀기업 정착지원 사업화 분야(100백만원), 회계감정 지원(5백만원)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가산점 1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공고일
- (지원기간) 2024년 1월~12월



지원절차

-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기업이 인증서 업로드 → 사업담당자 확인 → 가점 부여
- ※ 대상기업이 온라인 신청 접수 시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 공고일 기준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가점 부여



향후 추진계획

-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공고 시 적용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부서명_ 전시사업팀
- 연락처_ 031-259-6123



관련규정

- 道 중소기업 수출촉진 조례 제10조



지원대상 및 요건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가산점 3점 부여
-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의 70% 내외, 운송비 1CBM 편도, 통역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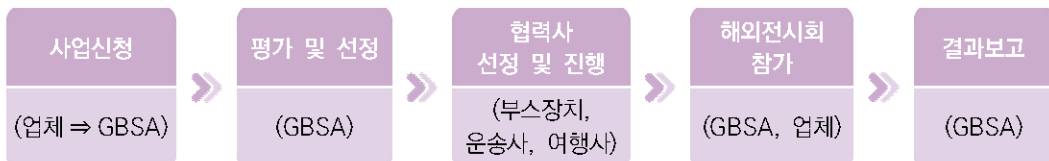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인증만료일까지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지원신청 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가산점(3점) 부여

해외 통상촉진단 지원사업 신청기업 가점 부여

- 기관명_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부서명_ 수출마케팅팀
- 연락처_ 031-259-6146



관련규정

- 해외 통상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 평가표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요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가산점 3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 (지원기간) 2025년 1월~12월



지원절차

- 이지비즈 사이트에 기업이 사업신청 시 인증서 사본 등록 → 시스템에서 확인 → 가점 부여
- ※ 대상기업이 온라인 신청 접수 시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향후 추진계획

- 해외 통상촉진단 지원사업 공고 시 적용

해외 G-FAIR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부서명_ 글로벌네트워크팀
- 연락처_ 031-259-6212, 6138



관련규정

- 해외 G-FAIR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지원대상 및 요건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직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요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가산점 2점 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지원절차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플랫폼(이지비즈)에 기업이 인증서 사본 등록 → 시스템에서 확인 → 가점 부여
- ※ 대상기업이 온라인 신청 접수시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향후 추진계획

- 해외 G-FAIR 지원사업 공고 시 적용

경기 R&D센터, 광교비즈니스센터 입주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부서명_ 광교테크노밸리팀
- 연락처_ 031-259-6030



관련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건물관리규정, 건물관리운영계획



지원대상 및 요건

- 벤처기업법 시행령 내 입주가능한 기업(벤처기업, 벤처집적시설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시설 등)
- 경기R&DB센터, 광교비즈니스센터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벤처기업법 시행령 112조의8 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입주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입주 가능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입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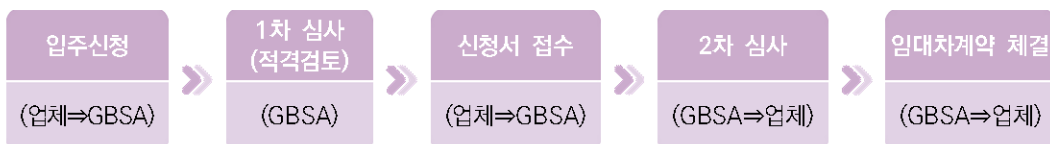


지원가점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의 경우 입주 심사 시 2점 가점 부여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시 우대가점(5점) 부여

- 기관명_ 경기테크노파크
- 부서명_ 기술지원팀
- 연락처_ 031-500-3333



관련규정

- 경기도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기술닥터사업(중기애로기술지원, 상용화지원, 단계별 검증지원) 선정된 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기술닥터사업(중기애로기술지원 20백만원이내, 상용화지원 50백만원 이내, 단계별 검증 5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감면
- 지원한도: 기업부담금 5%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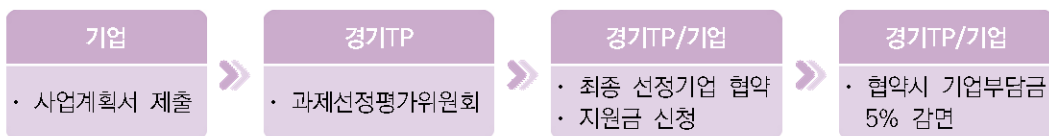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과제 선정 시
- 지원기간: 과제기간



지원절차



※ 단계별 검증지원은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으로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



향후계획

- 기술닥터지원사업 과제선정 후 기업부담금 감면 적용

경기TP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신청 시 무심사 합격

- 기관명_ 경기테크노파크
- 부서명_ 시설안전팀
- 연락처_ 031-500-3001



관련규정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경영 최고위과정 운영요령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 대표자 및 임원(이사, 연구소장 등)
- 기업지원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임원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4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 산업·경제 전문가 및 지식서비스산업 임원
- 기타 본 과정의 취지에 부합한 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지원수준 및 한도

- 경기TP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서류 신청 시 무심사 합격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경기TP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서류 신청 시
- 지원기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내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경기TP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서류 신청시 적용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도

- 기관명_ 한국은행 경기본부
- 부서명_ 업무팀
- 연락처_ 031-250-0092



관련규정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 중개지원 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지원대상 및 요건

- 경기도(김포·부천 제외)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경기도가 인증한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한도

- 운전자금에 한해 업체당 1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30억원) 이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한국은행 자격 심사 후 배정 확정시 지원
- 지원기간: 1년(최장 5년*)
- * 지원기간 1년 경과 후, 지원연장 신청 가능



지원절차

- 금융기관 대출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지원하는 간접금융방식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충 청 북 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충청북도
- 부서명_일자리정책과
- 연락처_043-220-3353



관련규정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인증서·현판 교부(인증기간 2년), 인센티브* 제공
 -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금리 우대(0.5%) 등
- 근로자 복지비 지원(건강검진, 여행·레저, 가족친화, 문화·교육 등)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고용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 지원기간: 2년간
 - * (근로자 복지비) 선정 당해연도 말까지 사용,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지원절차

- 참여기업 모집공고(7월) → 심사·선정(8~9월) → 인증패 수여 및 복지비 지원(10월)



향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위·수탁 협약 체결(도 ↔ 충북기업진흥원)
- ※ 본 내용은 전년도 사업내용으로 당해연도 사업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기관명_ 충청북도
- 부서명_ 경제기업과
- 연락처_ 043-220-3223



관련규정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요건

- 2025년 1월(기준시점) 이후 고용증가율^①과 고용인원 순증^② 모두 충족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① 고용증가율: 일반지역 6% 이상, 인구감소 3% 이상

② 고용인원 순증

상시근로자	일반지역		인구감소지역		비 고
	고용증가율	최소 기준	고용증가율	최소 기준	
20인미만	6% 이상	2명	3% 이상	2명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환산
20 ~ 49인		2~3명		2명	
50 ~ 79인		3~4명		2~3명	
80인 이상		5명		3명	

* 고용증가율(%): $\frac{\text{신청일 이전 최근 6개월 상시근로자수 평균} - \text{'25.1월말 상시근로자수}}{\text{'25.1월말 상시근로자수}}$

- 충청북도 고용우수 인증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1.8%) 지원
- 충청북도 고용우수 인증기업 금리우대: 0.5%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인증기업 유효기간(2년) 중 당해연도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기간: 융자기간 2년



지원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신청서 접수(충북기업진흥원)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심사결정 통보(충북기업진흥원 → 대출취급은행, 도, 시군) → 채권보전 후 대출실행(취급은행)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홍보 및 지원

- 기관명_ 충청북도
- 부서명_ 세정담당관
- 연락처_ 043-220-2773



관련규정

- 「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



지원대상 및 요건

-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써
 -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외)

* 제외

1.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지원한도: 우수기업 선정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적용



지원절차

- 우수기업 선정결과 통보(해당부서)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대상 결정(세정부서)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반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충 청 남 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충청남도
- 부서명_ 일자리기업지원과
- 연락처_ 041-635-3400



관련규정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선정요건: 충청남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상용근로자 고용률 20% 이상 증가 또는 5명 이상 신규채용 등 사업공고 시 참고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선정된 기업당 노동환경개선금 20,000천원 지원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접수 → 서류·현장 평가 → 선정평가(고용우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 자금교부 및 인증패 수여



추진일정

- 고용우수기업 심의·선정 계획수립: '26.5월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6.5 ~ 6월
- 고용우수기업 서류 및 현장 확인: '26.6 ~ 7월
- 고용우수기업 심의·선정(도 고용우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26.7 ~ 8월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현판 시상 및 지원금 교부: '26.10월
-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노동환경개선금 지원

- 기관명_ 충청남도
- 부서명_ 일자리기업지원과
- 연락처_ 041-635-3400



관련규정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선정요건: 전년 대비 장애인 상시 근로자 고용률 3.1% 이상인 충청남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등 사업공고 시 참고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선정된 기업당 노동환경개선금 20,000천원 지원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접수 → 서류·현장 평가 → 선정평가(고용우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 자금교부 및 인증패 수여



추진일정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심의·선정 계획수립: '26.5월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26.5 ~ 6월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서류 및 현장 확인: '26.6 ~ 7월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심의·선정(도 고용우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26.7 ~ 8월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서·현판 시상 및 지원금 교부: '26.10월
-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72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기관명_ 충청남도
- 부서명_ 세정과
- 연락처_ 041-635-3632



관련규정

- 지방세 기본법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지원대상 및 요건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 단,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금액 100억 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제외함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3년간



지원절차

고용우수기업 선정결과 통보: 도 일자리기업지원과 → 도 세정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법인 통보: 도 세정과 → 시군 지방세 전담부서



추진일정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결과 통보: 인증된 당해연도 11~12월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법인 확정 및 알림: 익년도 1~2월
 - ※ 본 내용은 전년도 사업내용으로 당해연도 사업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충청남도
- 부서명_ 일자리기업지원과
- 연락처_ 041-635-3412



관련규정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 사업공고 시 세부내용 참고



지원수준 및 한도

-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대출 시 이차보전 1% 우대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후 인증기간 6년
※ 지정일 경과 후 분기 말 지정 종료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기업 → 시·군) → 자체평가(시·군) → 서류심사(도) 및 현지 실사 → 평가·선정(도)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도)



추진일정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결과 통보: 인증된 당해연도 11~12월
-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및 접수: 익년도 5~6월
-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 서류 및 현지 심사: 익년도 6~8월
-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인증현판 수여: 익년도 9~10월
※ 본 내용은 전년도 사업내용으로 당해연도 사업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관련규정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
 - ②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
 - ③ 매출이나 고용이 최근 3년간 평균 10% 이상 성장한 기업
 - ④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 또는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
- ※ 고용우수기업: 충청남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상용근로자 고용률 10% 이상 증가 또는 5명 이상 신규 채용 등 사업공고 시 참고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보증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전액보증, 5천만원 초과 85% 부분보증
- 보증료율: 연 0.9% 이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후 3년



지원절차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



추진일정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결과 통보: 인증된 당해연도 11~12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전북특별자치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명_ 기업애로해소과
- 연락처_ 063-280-3228



관련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연도별 계획수립 및 공고)



지원대상 및 요건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중
- 전전년도 말(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전) 종사자 5인 이상인 기업이,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종사자 평균 인원 3인 이상 고용 증가시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지원내용

- 일반기업: 기업당 융자한도 최대 5억원, 이차보전 2.0%
- 우대지원: 기업당 융자한도 최대 7억원, 이차보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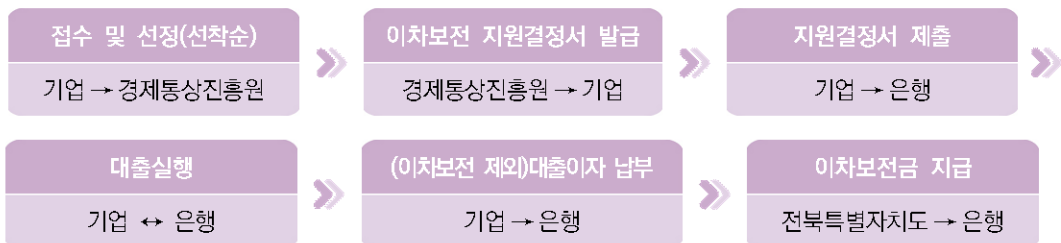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경영안정자금 신청시 요건 심사 후, 우대 적용하여 지원결정
- 지원기간: 융자금 상환기간(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절차



향후 추진계획

-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이 요건 충족시 우대 지원(융자한도 범위내 분기별 접수)



관련규정

- 전북특별자치도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업체
- * 도지사인증상품 지정업체 선정기준 - 종사자수(조합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업체 및 국가공인품질인증 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업체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우수상품 선정시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인증마크(JB) 상품 부착 사용
- 국내 각종 판촉행사 및 마케팅(지정기업 육성 홍보 및 온라인 프로모션 등) 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기업으로 지정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우수상품 선정심사 시
- 지원기간: 우수상품 선정, 인증서 교부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절차

- 공고 → 우수상품 신청 → 심사(서류 및 현지실사) → 우수상품 선정



향후 추진계획

- 2027년 우수상품 선정심사('26. 8~11월) 및 인증서 수여식('26.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명_ 기업애로해소과
- 연락처_ 063-280-3228



관련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지원수준 및 한도

-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각 부문별 경영개선보조금 25백만원 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후 경영개선보조금 지원(기업당 25백만원)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기업⇒시장·군수 및 경제 관련 기관·단체) → 서류평가(도) → 현장평가(도 내·외부 전문가) → 심층평가 및 최종 선정(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 공로패 수여 및 보조금 지원 → 사업 정산



향후 추진계획

- 2027년 사업계획 공고: 2027년 3월
- 신청 및 접수: 2027년 3~4월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2027년 4~5월
- 심층평가 및 최종선정: 2027년 6월
- 공로패 수여 및 보조금 지원: 2027년 7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027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기관명_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명_ 기업애로해소과
- 연락처_ 063-280-3228



관련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및 요건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지원
- 경영안정자금 대출시 이차보전 3.0% 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유망중소기업 선정 후 인증기간 5년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기업 ⇒ 시장·군수) → 서류평가(도) → 현장평가(도 내·외부 전문가)
→ 심층평가 및 최종 선정(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 인증서 수여 → 자금 지원



향후 추진계획

- 2026년 사업계획 공고: 2026년 8월
- 신청 및 접수: 2026년 8월
- 서류 및 현장평가: 2026년 8~9월
- 심층심사 및 최종선정: 2026년 10~11월
- 인증서 수여: 2026년 11월
- 자금지원: 인증기간 내

179 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 유예

- 기관명_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명_ 세정과
- 연락처_ 063-280-2749



관련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지원대상 및 요건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4%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수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간)
- 지원한도: 탈세제보 등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취득가액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제외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18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 이후
- 지원기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인원이 4% 이상 증가한 연도



지원절차

- 시군에서 세무조사 의뢰한 법인에 대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의뢰 상시근로자수 확인 후 조사면제 법인 확정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3월)시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 지속 추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경 상 북 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경상북도
- 부서명_기업지원과
- 연락처_054-880-2679



관련규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경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규정, 보증심사운용요령
-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지원대상 및 요건

-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
- “고용창출 우수기업(청년고용우수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우대지원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보증한도 및 보증요율
 - * 일반기업: 2천만원, 보증요율 연 0.8%(0.2% 감면), 이차보전 2%(1년간)
 - * 우대기업: 5천만원, 보증요율 연 0.8%(0.2% 감면), 이차보전 2%(1년간)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5년간 보증지원, 이차보전(2%) 1년간 지원



지원절차

- 보증신청(사업자) → 신용조사(경북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경북신용보증재단)



향후 추진계획

- 고용창출 우수기업(청년고용우수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지속 추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경 상 남 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경남신용보증재단
- 부서명_ 보증지원부
- 연락처_ 055-715-5127
(1644-2900)



관련규정

- 『소상공인 시책보증 운용기준』 제6조



지원대상 및 요건

- 경상남도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원수준 및 한도

- 보증금액 한도의 200% 우대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선정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원절차

- 적용기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 내 신규 보증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지속 시행

- 기관명_ 경상남도
- 부서명_ 국제통상과
- 연락처_ 055-211-3183~5



관련규정

- 「2026년 수출지원사업 기본계획」



지원대상 및 요건

- 경상남도지사가 선정한 「고용우수기업」



지원내용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업체 선정 시 가점부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우수기업 유효기간 내 해당 시 적용



지원절차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 → 업체 선정 시 우수기업 여부 확인 → 가점부여 → 선정여부 통보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지속 시행 예정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신청기업 자격요건 우대

- 기관명_ 경상남도
- 부서명_ 산업인력과
- 연락처_ 055-211-3563



관련규정

-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시행지침(경상남도)



지원대상 및 요건

- 경상남도 소재(본사) 중소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신청기업 자격요건 우대
- (사업내용)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업	• 복지지원금(상시근로자수 대비 차등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자부담10% • 근무환경개선금(근무환경을 위해 시설 개선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생활임금, 최대 12개월, 기업당 3명) • 추가고용장려금(정규직 전환시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기업당 3명) • 청년친화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기타	• 도 일반응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노무컨설팅, 금융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우대 등 • 기업 맞춤형 홍보 지원 및 채용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신청기업 자격요건 우대
- (지원기간) 청년친화기업 선정 다음연도 부터 2년간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모집 → 신청기업 심사·선정(자격요건 우대) → 인증서 수여 및 지원



향후 추진계획

-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신청기업 자격요건 우대

경상남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기업 심사 우대

- 기관명_ 경상남도
- 부서명_ 산업인력과
- 연락처_ 055-211-3384



관련규정

-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시행지침(경상남도)



지원대상 및 요건

- 도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남도에 둔 만50~64세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 ※ 단,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별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경상남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기업 심사우대
- (사업내용)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250만원) 지원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경상남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기업 심사 시 우대
- (지원기간) 2026.1.1. ~ 12.31.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모집 → 고용장려금 신청 → 접수 및 심사 → 장려금 지급



향후 추진계획

-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기업 심사우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

Preferential Support System for Korea's Best Jobs

- 기관명_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명_ 노동일자리과
- 연락처_ 064-710-3795



관련규정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운영지침



지원대상 및 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자 등록을 한 1인 이상 상시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미취업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1인당 월 50~70만원 지원
 - ① 생애 첫 일자리(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미만자): 월 50만원 지원
 - ② 추가고용(5인 미만 기업, 전년도 연평균 노동자 수 대비 청년 정규직 추가 채용 기업): 월 70만원 지원(1년)
 - ③ 더 나은 일자리(최저임금의 120% 이상): 월 60만원 지원
- 1~16인 기업: 최대 5명, 17인 이상 기업: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현원의 30% 지원 (최대 10명)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선정일로부터 1년 지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1년 추가 지원 (최대 2년)



지원절차

- 기업에서 사업참여 신청 →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지급



향후 추진계획

- 지원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지원

- 기관명_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명_ 노동일자리과
- 연락처_ 064-710-3797



관련규정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지원대상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며, 사업자 등록을 한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서 노동자에게 숙소 또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업



지원수준 및 한도

- 사업 참여별 최대 10명까지 지원: 피보험자수가 1~16인은 최대 5명, 17인 이상 기업은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현원의 30% 지원
- 월 숙소 임차비용의 60% 또는 주택보조수당의 80%(1인당 30만원 한도)
- 1~16인 기업: 최대 5명, 17인 이상 기업: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현원의 30% 지원 (최대 10명)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약정일로부터 최대 1년간(생애 1회 1년 연장 가능)



지원절차

- 참여 신청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대상자 확정 → 지원금 지급



향후 추진계획

- 지원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

- 기관명_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명_ 노동일자리과
- 연락처_ 064-710-3795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지원대상 및 요건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 * 1년 이내 인위적 감원 없으면서 청년 평균 임금이 도 생활임금 이상, 일생활균형제도 2개, 직원복지제도 3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청년 지원)

- (월 1회 지원) 주택임차금, 정착지원금, 교통비, 자녀돌봄 지원금 중 3개 선택
- (해당 사항 발생 시 지원) 육아휴직자 지원금, 장기근속 축하금, 건강검진비, 결혼·출산·입양·육아휴직 복귀축하금
- (지원기간내 연 1회 지원) 직무교육훈련비

(기업 지원)

- 선정서 수여, 사업장 부동산 재산세 감면(50%), 구내식당·통근차량 운영 비용 지원, 청년 신규 채용 장려금, 업무처리 담당자 인센티브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22년부터 시행(매년 기업 선정)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년(인증기간)



지원절차

- 사업공고 → 1차 서류 및 현장 평가 → 2차 인증 최종 심사 → 선정 및 지원



향후 추진계획

- 2026년 신규 기업인증 및 기인증 기업 지원

- 기관명_ 제주신용보증재단
- 부서명_ 신용보증부
- 연락처_ 064-750-4800



관련규정

-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창출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지원수준(내용) 및 한도

-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 ① 고용창출기업은 창업 후 1년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그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대비 증가한 중소기업으로 최종 결정된 보증수수료에서 0.2% 감면
 - ②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시 최종 결정된 보증수수료에서 0.3% 감면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① 고용창출기업)
 - 적용시점: 보증 실행 시점 / 지원기간: 보증 유효 기간 내
- (② 고용우수기업)
 - 적용시점: 고용우수기업 인증 시점 / 지원기간: 고용우수기업 인증 유효 기간 내



지원절차

- 신용보증 신청 시, ① 최근 3개월 및 직전 3개월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 등 고용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제출 ②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제출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우수기업 신규 인증이 종료된 상태로, 최종 인증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적용 예정



2026.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제도

- ◆ 인 쇄 일 2026년 9월
- ◆ 발 행 일 2026년 9월
- ◆ 발 행 처 고용노동부
- ◆ 편 집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전화 (044) 202-7235
- ◆ 디자인·인쇄 동명기획 044) 868-7542

